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모색토론회

2007.11.20.화.오후5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국가인권위원회

2007.11.20.화.오후5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전화) 02-2610-4741 (이메일) chrp@skhu.ac.kr <http://hr.skhu.ac.kr>
※ 발표문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참고 하겠습니다.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모색토론회



2007.11.20.화.오후5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전화) 02-2610-4741 (이메일) chrp@skhu.ac.kr <http://hr.skhu.ac.kr>
※ 발표문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참고 하겠습니다.

토론회 안내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 모색 토론회

- 일시 : 2007년 11월 20일 화요일 오후5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인권에 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해묵은 관점과 자의적인 인권 제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학생 인권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을 학교라는 사회의 주체로 보는 관점과 학교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이 절실히 합니다.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보편적 인권의 기준과 관점으로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인권지침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에서는 자유권뿐 아니라 사회권과 소수자 인권까지 포함하여 통합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의 인권과 교육에 관심있는 개인, 단체 여러분이 함께하셔서 학생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풍부한 경험과 고민을 나누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사회 : 진영종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소장, 영어과 교수)

1부 : 발표 (45분)

- (1)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에 대하여 :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 (2)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해외사례 : 서영표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연구원)
- (3) '학생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 만들기' 지침서 초안 발표 :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부 : 쟁점토론 (60분)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학교인권지침'의 기본 원칙에 대한 쟁점 토론.

학생, 교사, 교육부 관계자, 학자가 함께 모여 학생 인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나누는 시간.

[토론자]

하승수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교수)
박교선 (교육부 연구관) / 이명남 (영서중학교 교사) / 이재익 (안동중학교 교사)
박조은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김정엽(서울 석관고등학교 학생)

3부 : 종합토론 (45분)

목차

- | | |
|---|----------|
| (1)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에 대하여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 ----- 1 |
| (2)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해외사례
서영표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연구원) | ----- 13 |
| (3) '학생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 만들기' 지침서 초안 발표
인권운동사랑방 | ----- 31 |

[발표1]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에 대하여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류은숙 (soom03@hanmail.net)

- * 본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한 초고입니다. 본 지침이 취하려 하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 * 각주를 생략했습니다.
- * 본문에서 '아동'은 18세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일컫는 말이고, 맥락상 강조돼야 할 경우에만 학생 또는 청소년이라 했습니다.
- * 협약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말합니다.

1. 참고한 기준

- '아동, 청소년, 교육'에 관한 국제인권조약, 선언, 행동프로그램, 보고서, 권고 및 지침
- 1948 세계인권선언, 특히 26조 교육의 권리
 - 1960 유네스코, 교육에서의 차별방지협약
 - 1966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규약, 특히 13조 교육의 권리
 - 1966 유엔시민.정치적권리규약, 특히 17조 프라이버시, 18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24조 아동의 권리
 - 1966 유네스코/ILO 교사의 지위에 대한 권고
 - 1973 ILO 138호 조약, 고용 죄저 연령(한국 1999.1.28 비준)
 - 1974 유네스코, 교육: 국제이해, 협력 및 평화 그리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련된 교육에 관한 권고
 - 1979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특히 10조 교육분야에서의 남녀평등
 - 1982 유엔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7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의 금지'
 - 1985 소년사법; 유엔 소년사법을 위한 최소 규범 기준(베이징 규범)
 - 1989 유엔아동권리협약
 - 1989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12 '여성에 대한 폭력'
 - 1989 유엔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17 '아동의 권리'

1990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에 관한 세계 선언”
 1990 청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 가이드라인(Riyadh Guidelines) 유엔총회 결의안 45/112
 1990 자유를 상실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엔 규범, 유엔총회 결의안 45/113
 1990 제1차 아동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 ‘국가행동계획’ 개발 약속;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에 관한 세계 선언 및 1990년대의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1992 유엔인권위원회,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 방지를 위한 행동프로그램’(결의안 1992/74) 교육 제 18-23항.
 1992 유엔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20, ‘7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의 금지’
 1993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비엔나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
 1993 유엔인권위원회, ‘아동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결의안 1993/79, annex)
 1993 인권교육 10년, 유엔 총회 결의안 48/127, 비엔나 선언 78-82항에 기초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1996.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의 1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권고
 1998 유네스코, 청소년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리스본 선언
 1999 ILO 182호 조약; 최악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와 철폐를 위한 즉각 행동에 관한.(한국 2001.3.29 비준)
 1999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3 ‘교육의 목적’
 1999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1 ‘초등교육에 관한 행동계획’
 1999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2000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4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2000 유네스코 Dakar 행동 구조(The Dakar Framework for Action)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우리의 집단적 약속 지키기, 세계 교육 포럼에서 채택
 2000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2000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2000 ILO, 모성보호협약 No.183
 2000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E/CN.4/2000/6)
 2001 유엔사무총장; 아동에 대한 폭력에 대한 연구 착수, 유엔총회 결의안 56/138
 200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 ‘교육의 목적’
 2001.1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연례보고서(E/CN.4/2001/52)
 200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
 2002 아동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기;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
 2002.1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E/CN.4/2002/60)
 2002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5 ‘물에 대한 권리’
 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3 ‘HIV/AIDS와 아동의 권리’
 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청소년의 건강’
 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아동권리협약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권고
 2003.1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E/CN.4/2003/9)
 2004 유엔사무총장 세계청소년보고서 2005에서의 권고(A/60/61-E/2005/7)

2004.1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E/CN.4/2004/45)
 2004.12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E/CN.4/2005/50)
 2004.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25 ‘잠정적 특별 조치’
 2004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XXX’
 2005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6 ‘모국 외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처우’
 2005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8 ‘노동의 권리’
 200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 ‘유아기의 아동권 이행’
 200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체벌과 기타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벌형태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200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9 ‘장애아동’
 2006.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7-2011)
 2007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0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

기타: 2000 세계교육포럼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에서 착수된 접근들-
 유니세프, 아동친화적 학교 child friendly school
 WHO, 영양 친화적인 학교 Nutrition friendly schools Initiative(NFSI)
 유니세프, 유네스코 등 공동캠페인 FRESH(Focusing Resources on Effective School Health: A FRESH Start to Improving the Quality and Equity of Education)

2.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의 열쇠말

- (1) 참여와 결정
- (2) 차이의 존중 및 차별방지
- (3) 아동의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
- (4) 권리 구제의 제공
- (5) 아동이 감당할 만한 교육
- (6)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 (7) 개인과 공동체 관계에 유념
- (8) 교사의 강화
- (9) 네트워크와 연대
- (10)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기반한 양질의 교육환경

(1) 참여와 결정

- 아동의 참여는 특히 협약 12조와 관련된다. 12조는 아동의 기본 권리이다. 아동의 참여는 권리이지, 의무로 인식돼서는 안된다. 따라서 어떠한 압력, 강요, 영향 또는 조작(manipulation), 동원도 없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청취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입양, 부모로부터의 분리, 이름 변경, 건강권, 교육권 등이다. 아동은 참여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정보 접근권을 갖는다.
- 아동의 견해를 존중한다는 것은 아동의 견해가 무시돼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아동의 견해라고 해서 단지 인정하고 본다는 의미도 아니다. 협약 5조에 따라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하여야 한다.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의사표시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의미한다. 참여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한 것이고 변화를 성취하는 것이다.
- 아동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쳤음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의 참여에는 후속작업과 평가가 보장돼야 한다.
-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비교적 큰 도전은 아니며, 그들의 견해에 적정한 비중을 두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 협약은 아동의 의사표현 연령의 최저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아동이 아주 이른 나이부터 견해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 아동에게 편안한 시간과 공간을 주고 의견을 표현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아동의 참여는 아동 일방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아동과 더불어 일하거나 아동을 돌보는 성인들은 아동의 의사에 귀 기울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발전시켜야 한다.
- 아동의 참여권은 아동이 가진 모든 권리의 행사와 밀접히 관련된다.
- 아동의 참여는 폭력 없는 환경을 요구한다. 아동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비인간적인 훈육이나 체벌이 금지되고, 협상과 대화가 갈등방지와 해결의 수단이 되는 환경을 말한다.
- ‘능동적 참여, 의사결정,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학교에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아동에게 참여는 도전적인 학습과정이지 단순한 형식으로 축소돼서는 안된다. ‘명목적’ 참여, ‘장식적’인 참여, ‘조작된’ 참여는 진정한 아동의 참여가 아니다.
- 참여는 아동최상의 이익을 증진해야 하고 각 아동의 인격적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
- 모든 아동은 차별없이 참여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 아동은 학교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단순한 수혜자나 정체 또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참여자여야 한다. 여기서 참여란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진정한 기회를 갖고 결정 또는 행동에 관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양질의 참여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반복과 암기를 피하고 행동하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 자신의 견해와 감정을 표시할 권리는 아동의 일상 생활에 정착돼야 한다.
-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달리할 권리가 있다. 별 받을 것을 두려워하거나 실패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참여를 시도하고, 실수하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차이의 존중 및 차별방지

- 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이는 “아동 자신의,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 특수한 질병을 앓는 아동, 성적 소수자 아동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요구된다.

- 공공교육기관은 비시민권자와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에게 개방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 접근성과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한 비시민권자의 격리된 학교 교육과 비시민권자의 처우에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피한다.
- 사회적 차별,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이주노동자의 자녀, 여아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교는 아동의 ‘다양성’을 사랑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1978년 ‘다를 권리’의 개념을 수립했다. “모든 개인과 집단은 다를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를 다른 존재로 여길 뿐 아니라 그렇게 간주될 권리를 갖는다”고 했다. 따라서 사람은 타인의 문화적 규범에 자신을 종속시킬 것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 그대로일 권리가 있다.
- 다양성은 교육의 초석 중 하나여야 한다. 다양성은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들의 생활양식을 표현하는 것이며 민족들간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중의 하나는 학생 자신의 것과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고취하는 것이고, 다른 문화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모든 교육 체계에 담겨야 한다. 양질의 교육은 인권에 대한 존중과 인격적 발전에 기반한 지식에 기초한다. 따라서 반차별이 존엄한 삶에 필수적이라는 깨닫는 것이 양질의 교육과정이다.
- 문화적 및 기타의 차이 뿐 아니라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
- 아동이 가진 차이 때문에 아동의 교육에 대한 접근 및 교육에서의 성취가 불균형을 이뤄서는 안된다. 가난한 아이가 체벌을 더 자주 심하게 받는다거나,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의 학습동기 유발이나 성취를 떨어뜨리는 교육운영은 지양돼야 한다. 또한 성차별을 유발하거나 자극하는 교육, 농촌을 포함하여 특정지역에서 열악한 교육접근권, 이주자 자녀 등의 교육권 등이 문제가 된다.
- 차별은 아동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배제한다.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과 지원을 박탈한다. 아동에 대한 차별은 그 대상 집단에 속한 아동에 대한 금기, 부정적 혹은 비판적인 태도와 결합되어 종종 그런 아동이 교육에서의 여러 서비스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 부적절한 보살핌이나 관심, 놀이, 학습과 교육에의 기회의 제한, 혹은 감정이나 견해의 자유로운 표현의 금지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차별은 또한 착취적이거나 학대적일 수 있는 가혹한 대우와 비이성적인 기대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학교는 차별과 낙인찍기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해야 한다.
- 학교 당국은 적극적으로 차별이나 잠재적인 차별을 확인하고, 그들의 권리의 인정과 실현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개별아동과 아동집단을 찾아내야 한다.
- 학교는 차별을 감독하고 이에 맞설 책임이 있다.

(3) 아동의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

- ‘교육’에 대한 총체적 접근법이 요구된다. 아동에게 교육이란 신체적, 정신적, 영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실천적 측면을 포괄하는 것이다.
- 학교는 아동의 학습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학교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의 총체적 삶을 염두에 둬야 한다.
- 학교는 아동의 삶에서 중요한 인격적 및 사회적 환경이다. 광범위한 맥락 속에서 아동을 ‘총체적’을 바라보고 이해한다. 아동이 학교 체제속에 들어오기 전의 상황(예를 들어 건강 및 영양상태, 사회적 및 언어적 기술 등에서 취학 준비가 되었는가)과 아동이 교실을 떠난 후(가정, 지역사회,



내전
방사

여기 아는데
총체적

일터에서)에 아동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유념한다.

- 학교는 학교 안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뿐 아니라 취학 전 유아에 대한 돌봄, 가정환경상실 또는 학대·방임된 아동, 방과 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런 위험에 처한 아동, 취업을 준비하는 아동, 학교에서 중도탈락한 아동 등 아동이 처한 총체적 상황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처하고 위탁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 출석규범에 부응하기 어려워하는 아동 및 '중퇴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4) 권리구제

- 아동이 갖는 인권이 의미가 있으려면 권리침해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 학교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의 발달상태가 인권침해행위에 특히 취약하며, 아동의 견해는 여전히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은 투표권이 없고, 인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정치적 과정에 있어서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하지도 못하며 아동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그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찾기 위해 사법적 체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며, 아동의 권리보호를 해줄 단체에 대한 아동의 접근이 일반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포함된다.
- 따라서 아동의 특수한 처지에 민감한 절차가 아동 자신 및 그 대리인에게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아동이 이해할 만한 정보 및 자문의 제공, 자기 변호를 위한 지원을 포함한 옹호, 필요한 법적 절차와 기타 독립적인 진정절차, 법원에 대한 접근 제공이 있어야 한다. 인권의 침해가 발견되면 적절한 배상 및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학교는 아동이 다양한 권리 구제 방법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마련하고 아동 및 학교의 모든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학내 권리구제제도의 마련은 아동의 의견과 참여를 요구한다.
- 전통적으로 학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감추는 경향이 있었다. 아동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아동의 프라이버시는 당연 존중돼야 하지만, 학교 외부의 권리구제에 접근하는 것이 방해돼서는 안된다.
- 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아동 및 학교 구성원들에게 이를 인지시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 직접 혹은 아동을 대리하여 제출한 진정을 포함하여 조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특히 학교에서 가장 취약하고 불이익을 받는 아동집단에 국가인권위가 접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 권리의 어떠한 위반이든간에 아동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갖도록 모색할 의무를 진다.
- 청소년기에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경제영역으로 진출해 노동을 시작하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학교는 근로 청소년이 일하고 있는 작업환경과 조건을 규제할 것을 촉구하고, 근로 청소년들이 법적 구제메커니즘에 접근권을 갖도록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특히 실업계 학교는 실습교육을 명목으로 한 노동착취로부터 학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교 폭력, 부당한 처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학대, 비현실적으로 높은 학업 기대와 교내외에서의 괴롭힘과 못살게 구는 행동과 관련된 피해자인 아동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학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주창·옹호하는 한편 피해자인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학교는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권이 회복·유지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

- 학대받는 아동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실효적인 보고 및 위탁 메커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동폭력에 대한 모든 사건보고가 적절히 조사되어야 하고, 중대한 위험으로부터의 아동보호가 보장되는 한편, 그 목적은 지원적이고 교육적이며 징벌적이지 않은 개입을 통해 부모가 폭력이나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처벌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 구제조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고는 피해자 및 가해 아동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5) 아동이 감당할 만한 교육

- 학교는 아동이 합리적으로 편리한 지리적 장소로 등교 가능한 안전한 물리적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 교육에 드는 비용은 아동과 그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교육은 가장 취약한 집단의 아동에게 사실상 접근 가능해야 한다.
- 교과과정 및 교수법 등 교육의 형태와 내용은 아동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협약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목적에 부합돼야 한다.
-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와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처해있는 아동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 협약은 이상의 내용을 교육의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응성이라 표현하고 있다.
- 무거운 학교 책가방은 아동의 허리 고통, 척추측만과 후만증을 부른다. 과도한 시간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에 앉아 보내야 하고 체육이나 여가 활동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과중한 학습부담은 이런 신체적 효과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의 때로는 더 치명적인 해를 아동에게 끼친다. 따라서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 공교육은 사교육을 의식하여 선형학습 등의 관행을 아동에게 강요하거나 기대해서는 안된다.
- 아동이 감당할 만한 교육은 '아동친화적'이고 '아동중심적인' 교육을 말한다. 이는 협약의 교육목적에 부응하는 것이다. 협약은 다음을 교육의 목적으로 한다.

-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발전
-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 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 (a)의 핵심은 아동중심적인 교육이다. 핵심은 개별 아동의 인격, 재능, 능력의 발전이라고 했다. 이는 '모든 아동이 독특한 개성, 이익, 능력, 학습 욕구를 가진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다. 따라서 커리큘럼은 아동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상황과 직접 연관성을 가져야 하며, 아동의 현재 및 미래의 필요와 연관돼야 하며, 아동의 발전하는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상이한 아동의 욕구에 맞도록 교수방법을 재단해야 한다. 교육은 모든 아동에게 필수적인 생활 기술을 주는 것을 보장해야 하고 어떤 아동도 생애에서 대면할 예전가능한 도전들에 직면할 준비됨없이 학교를 떠나서는 안된다. 기본 기술에는 문해력, 주리력만이 아니라 균형잡힌 결정을 할 능력, 비폭력적 방

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능력, 건강한 생활양식을 발전시킬 능력, 좋은 사회적 관계와 책임, 비판적 사고, 창조적 재능, 자기 생활의 선택을 추구하기에 요구되는 도구가 되는 여타 능력들이다.

• (b)는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 체벌은 교육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다. “아동이 교문을 통과하였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교육은 아동의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만 한다.”

• 체벌금지가 훈육의 긍정적인 개념의 모든 의미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물리적인 행동과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일정한 정도의 고통, 불편함 혹은 굴욕을 유발하는 고의적이고 징벌적인 힘의 사용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성인으로서 우리는 보호를 위한 물리적인 행동과 징벌적인 폭력과의 차이를 알고 있다. 아동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 이러한 구별을 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모든 국가에서 법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간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비징벌적이며 필요한 물리력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아동이 위험한 행동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재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음을 인정한다. 역시 여기에는 아동 혹은 기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촉발된 물리력의 사용과 처벌을 위한 물리력의 사용간의 분명한 구별이 존재한다.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의, 필요한 최소한의 힘의 사용이라는 원칙은 항상 적용되어야만 한다. 제재의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사용되는 모든 방법이 안전하고, 상황에 대해 비례적이며, 통제의 형태로서 고통을 고의적으로 가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상세한 지침과 훈련이 또한 필요하다.

•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대한 해석은 협약 전체와 일치하는 것이어야만 하며,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 및 아동의 견해를 적절히 다루 의무가 포함된다. 아동최상의 이익이라는 명분은 아동의 존엄성 및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에 위배되는 체벌 및 기타 형태의 잔인하거나 모욕적인 처벌과 같은 관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 “적절한” 감독과 지도의 해석은 협약전체와 일치해야만 하며,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기타의 잔혹한 혹은 훈육의 굴욕적인 형태를 정당화하는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 아동의 발달상의 필요는 존중되어야만 한다. 아동은 성인들의 말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학습한다.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이 아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굴욕을 준다면 성인들은 인권의 경시를 보여주며 이러한 것들이 갈등의 해결이나 행동의 변화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라는 강력하고 위험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

(6)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 협약은 아동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은 권리의 주체로서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문제 해결에 영향을 끼치고, 사회변화와 민주주의 건설과정에 협력자로서 개입할 수 있는 존재이다. 아동의 지위를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단언하고 있다. 아동은 부모나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단순한 관심의 대상이지도 않다.

• 아동은 ‘성숙’을 기다리는 인생의 대기장소가 아니다. 아동은 더 이상 미성숙한 인간으로 인식돼선 안된다. 건강문제를 다룬다면 그에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아동의 접근 능력이 필수적이고, 교육을 다룬다면 기술·경험·책임을 획득하는 아동 능력의 발전이 중요하다. 가족 내의 아동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능동적 기여가 필수적(입양, 부모 이혼시 거조지정 등 어느 문제라도)이다.

• 성인과 아동과의 관계는 발전적으로 변화해왔다. 교사, 부모, 돌보는 사람 등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사람은 단순한 제공자, 보호자로부터 협상자와 촉진자로 발전했다. 아동이 견해를 표시하고 상의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을 증진하고 공간을 창조할 것이 이들에게 기대된다.

• 아동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기성세대가 정한 ‘학생다움’에 대한 고정관념과 행동양식을 강제하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요구된다. 아동을 수단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의 전환이다.

• 교육권에 대한 접근은 더 이상 ‘양적인’ 접근이 아니라 ‘질적인’ 접근이다. 교육의 질을 논할 때 핵심은 아동 중심적이며 아동우호적인 교육이다.

• 아동은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다. 그들은 부모 혹은 양육자들로부터 생존, 성장과 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양육,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이다.

• 아동의 능력발달은 긍정적이고 가용한 과정으로 여겨져야 하며, 아동의 자율과 자기 표현을 제한하는 권능을 부여하는 아동의 상대적인 미성숙과 사회화의 필요를 지적하여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온 권위적 관행에 대한 변명이어서는 안된다. 부모와 기타의 사람들은 대화 및 예를 보임으로써 참여권 및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아동의 권리 행사를 위한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아동중심적인 방법으로 ‘감독과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 아동은 단순한 지식의 수령자가 아니라 학습과정의 능동적 행위자로 인식돼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학교 체제가 중요하다.

(7) 개인과 공동체

• 교육은 개인과 공동체간의 장벽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교육은 지식 뿐 아니라 세대간 가치 전달의 핵심 장치이다. 노동경시,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폭력, 불공정함 등을 전수하거나 차별적인 교육은 사회의 해체나 지역·계층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런 갈등을 파열시키는 교육이야 말로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다리일 수 있다.

• 교육은 개인의 인격 발달 뿐 아니라 공동체의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및 경제적 진보에 관한 것이다. 교육은 모든 국가와 집단간의 평화와 이해, 관용과 우정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 질서유지와 통제의 강박에서 나오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인권의 향유에 기여하는 교육을 통해 아동은 인권존중을 사회의 기본가치로서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다.

• 아동의 프라이버시 등 개인으로서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할 때, 아동은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와 책임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 아동은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는 삶의 기술을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8) 교사의 강화

• 교육의 물적 토대를 비롯해 교육환경을 고려치 않고 학생에 대한 인권존중을 교사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학생인권에 초점을 둔 시스템을 갖춘 학교가 요구된다.

• 교사는 인권에 기반한 학교 시스템을 갖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자이다. 교사는 그러한 학교의 변화를 위한 옹호자이자 변화의 촉매자여야 한다. 어떤 교육 개혁도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됨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 모든 단계의 교육체계에서 교사는 존중받아야 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교사는 교사로서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의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교사의 직업적 환경과 가르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사는 학생과 사회에 대한 교사로서의 전문적 책임성을 받아들이고 둘다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 교사는 학생의 긍정적 역할 모델로 행동할 수 있다.
- 교사는 학생의 다양한 이해 수준과 공부 스타일, 학생의 신체적 및 정신적 발달에 대해 이해하며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며 참여적인 학습 환경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의 양성 및 재교육 과정에 아동권리에 기반한 접근법의 제공과 풍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 교사는 학교에서 취약한 아동,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발견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위탁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직무 초기 및 직무 중의 훈련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학습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
- 교사는 정치적 및 기타 압력에서 자유롭게 학문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 교사의 노동조건은 효과적인 학습을 최상으로 증진시키고 교육에 전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 교사 조직은 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힘으로 이해돼야 하며, 따라서 교육정책의 결정에 결합돼야 한다.

(9) 네트워크와 연대

- 학교는 학생, 교사, 부모, 지역사회, 민간단체 및 기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관련되는 곳이다. 학교를 학교당국자만의 관할 구역인 폐쇄공간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을’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 정부가 이미 마련한 것에 대한 대응차원이 아니라 교육 계획의 입안, 이행, 모니터와 평가 과정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社会의 다양한 행위자들은 학교를 연대의 공간으로 창조해야 한다. 차이를 수용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공감을 표하고 정치적 이타주의를 발휘할 수 있는 시민의 창조에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 사회경제적 배제와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모든 아동이 교육에 접근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받는 수용할만한 내용의 교육을 받으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네트워크의 구성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 아동의 권리와 보호와 증진이 ‘주류화’되는 것과 국내에 현존하는 모든 인권 기관 및 관련 기관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함께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가정, 교내, 아동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형태의 시설, 청소년의 일터, 넓게는 사회전체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 의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있다.
- 아동 권리의 이행에는 아동 자신을 포함한 사회의 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책임이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국가가 통제하는 서비스 및 기관을 넘어서서 아동,

부모와 광범위한 가족, 기타 성인, 비국가서비스와 조직에게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아동 인권의 보장, 보호 및 감독을 위한 비정부기구와의 제휴와 연대의 발전을 환영해야 한다. 정부는 그들에게 비지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비정부기구와의 긍정적인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학교는 이를 기구와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동반자관계를 적극 맺어야 한다.
-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증진은 어떠한 학교 개선 과정의 성공과 유지에도 필수적이다. 지역사회 동반자의식은 학교에 대한 협력, 헌신, 공동소유감을 양산한다. 또한 학교에 대한 공공의 인식과 요구를 강화한다.

(10)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기반한 양질의 교육환경

- ~사회권적측면
+ 아동권적측면
교과내 내용 등
- 학교는 아동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핵심적인 생활공간이나 가장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곳으로 느끼는 곳이기도 하다. 학교는 안전한 환경, 정화된 식수, 적절한 위생, 좋은 영양공급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 아동에게 건강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 건강권에는 건강할 권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포함된다. 아동자신이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고, 생존 기술을 습득하고, 성생활·약물·임신과 출산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입수하고, 상담을 받고, 자신의 건강 관련 행동의 선택을 결정할 기회를 보장하는 안전하고 아동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아동의 건강권에는 아동의 병력 또는 상담한 내용 등에 대한 비밀유지와 프라이버시 존중, 적절한 성 및 임신과 출산관련 건강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 이어야 한다.
 - 안전은 아동의 행동에 대한 위협과 경고, 통제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친화적인 공간설계, 학교 통학로, 아동친화적인 도시와 농촌 설계, 안전에 대한 교육과 아동이 불안과 공포를 느낄 상황에서 긴급지원을 호소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보된다.
 - 아동은 친절하며, 지지가 되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범위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접근이 가능하며, 적절하고, 비공개적이며, 비판적이지 않고, 차별적이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 아동의 건강과 발달 증진을 위한 조치와 프로그램에서는 사생활과 비밀의 권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장려된다. 보건의료 제공자들은 아동에 관한 의학적 정보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의 참석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년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치료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비밀유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단지 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혹은 성인의 비밀에 대한 위반에 적용되는 동일한 상황에서만 공개될 수 있다.
 - 학교는 휴식, 여가 및 놀이의 권리를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아동은 놀이를 통해 아동은 즐기는 동시에 그들의 능력을 발전시킨다. 오늘날 아동은 휴식시간 마저도 경쟁적인 학업에 의해서 좌절되거나 또는 안전을 위해 행동을 삼가야 하는 시간, 화장실만 다녀오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권리는 아동중심적이고 안전하며 지원적이고 고무적이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과 접촉하고 놀며 상호작용할 기회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학교는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권리를 위한 적절한 자원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배치할것이 장려된다.
 - 좋은 건강, 위생, 영양은 양질의 교육을 위한 ‘투입’(input)일뿐 아니라 교육의 ‘결과’(outcomes)이기도 하다. 양질의 교육은 아동에게 더 나은 건강과 영양결과를 이끈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안정된 학교 환경은 아동을 건강의 위험, 학대, 배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 효과적인 학교 건강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협력관계의 일환으로 발전하면 가장 비용효과적이다.

학교는 건강과 교육부문이 결합될 수 있는 핵심 공간이다.

- 아동이 자신의 완전한 잠재성을 획득할 능력은 좋은 건강, 영양, 적절한 교육의 시너지 효과(상승효과)다. 좋은 건강과 좋은 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일 뿐 아니라 생산적이고 만족스런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수단이다.
- 보편적인 기본교육전략의 결과로 가장 취약한 아동이 학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학교라는 기본시설에서 건강, 교육, 영양, 위생부문이 연결되면 영향력 있고 지속가능하다. 학교는 보편적이고 비용효과적이다.
- 건강 관련 학교 정책은 안전한 물리적 환경만이 아니라 심리사회적 환경도 중요하다. 학생학대, 성희롱, 학교폭력, 괴롭힘(왕따) 같은 문제를 다뤄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을 보장함으로서 포용과 평등을 증진해야 한다.
-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할당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 요구된다.
- 학교 급식은 아동의 식이적 필요, 해로운 물질이 없을 것, 문화적 수용성 또는 소비자 수용성, 가용성,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발표2]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해외 사례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연구원, 서영표 (seoyp@hanmail.net)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위험과 폭력으로부터의 기초적인 보호 (protection)에서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provision)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원과 정보가 효율적으로 아동들의 필요와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의 참여(participation)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Virginia Morrow, 1999).

다시 말하자면, 위험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자원과 정보의 ‘제공’ 그리고 ‘참여’는 순차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하나가 결여된 채로 다른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Osler and Starkey, 1998: 315). 체벌과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자원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학습의 효율성을 말하면서 학생들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교과과정이나 교과방법을 듣지 않는 것도 대단히 비합리적인 발상이다. 빈곤과 괴롭힘(bullying) 등의 기본적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아동들 스스로의 느낌과 생각을 반영하지 않은 어떤 대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체의 참여가 배제된 이러한 종류의 대책은 UN 아동권리 협약이 보장한 아동권리의 (의도하지 않은 또는 제도화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UN아동권리협약12조와 13조 참조).

1. 참여¹⁾

서구의 아동인권 담론은 위해로부터의 아동보호에서 아동의 적극적 참여로 이동하고 있다. 아동권리 연대의 영국지부(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에 의해 추진된 어린이 구타(smacking)에 대한 연구는 5-7세의 아이들의 구타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스스로 표현하게 했다²⁾. 조사결과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아이들이 생각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타가 규율의 수단으로 현장에서 직접적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이것조차 확실하지 않다),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경험은 대단히 부정적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부모에 대한 증오, 대

1) 참여의 권리란 아래의 모든 권리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권리주체, 즉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권리의 정의와 보장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2) 질문지 작성과 관련해, 사전 시험조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휘와 개념은 모두 제외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지를 작성하려고 노력했다.

인관계에서 폭력이 사용될 가능성 등). 이 조사는 아이들 스스로의 생각에 기반하지 않은 어른들만의 생각에 기초한 대책은 매우 제한된 효과만을 가지거나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Willow and Hyder, 2004).

아동만큼 아동의 이해를 정확히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비장애인인 장애인만큼 장애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가사와 육아로부터 (관습적으로) 벗어나 있는 대부분의 남성이 가사와 육아가 얼마나 힘들고, 그것의 양성분담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깨달을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처럼, 성인의 시각으로 분석되고 재단된 아이들의 현실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왜곡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될 수 있다. 아이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현실은 더 부정확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른의 눈에 아이들은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템포드와 그녀의 동료들에 의해 보고된 스코틀랜드 학생들(3-18세)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교과과정과 교과과정의 발전, 시험, 학교정책의 우선순위, 학교 운동 등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가 반영되기를 바란다. 또한 학교 시설조건, 레저시설과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했다. 건강교육과 상담에 대해서, 학생들은 섹스, 심대 임신, 흡연, 마약복용 등에 대한 캠페인을 제안하면서 젊은 학생들의 문화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캠페인은 효과적일 수 없음을 지적했다 (Stafford, et al., 2003: 363-364).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과 아동 사이의 권리관계이다. 성인은 아무리 잘해도 아동들의 필요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지만, 아동은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제공되면 성인보다 '덜' 왜곡되고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권리관계 내에서 아이들은 스스로를 열등하게 생각하며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두려워한다 (Allan and I'Anson, 2004: 125).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정확히 듣기 위해서는 위계적 권리관계를 악화시켜야 하며, 어른이 신뢰할 수 있는 청자(listener)임을 확신시켜야 한다.

와이즈에 의해 보고된 다음의 사례는 성인이 아동을 대하는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링스워드 초등학교(Illingsworth Primary School)의 학생들은 교사들이 자신들을 대할 때의 언행을 지적함으로써 교육방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 학생은 그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교장선생님이 엄마의 통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엄마와 대화할 때 교장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고함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많은 어른들은 이 학생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을 것이라고 아주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아이에게는 소리쳐도 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템포드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공정하고(fair) 대의적인(representative) 의사반영을 원한다. 학생들은 협의(consultation)는 어른들의 편의에 따라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생들은 협의의 진실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아무런 행동의 변화도 없다면 협의에 관련된 모든 절차는 무의미한 것이다. 학생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면 질문하지 말라!"고 말한다. 학생들은 그들의 목소리가 실제적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은 그

들 스스로가 주장을 가지고 있으며 권리의 담지자임이 인정되기를 바란다. 공정하고 대의적인 의사반영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교가 우리에게 통신문을 주었는데 그 통신문의 주소란에 학부모의 이름이 아닌 참여하는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매우 좋은 경험이며, 색다른 일이었다. 우리가 학교의 통신문을 받을 때 그것은 언제나 '학부모님께 또는 보호자님께'라고 시작한다. 학교는 우리의 학교이며, [학교운영위원회(school council)]은 우리의 의회이다" (Stafford et al., 2003: 366)

모로우는 자신의 연구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과정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반영되기를 바랄뿐이라고 주장한다 (Morrow, 1999: 159-160). 어른들의 시각과는 다르게 어린 학생들은 민주적 절차와 중요성과 함께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까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자질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억누르고 왜곡시키는 것이 학교 또는 사회전반의 퍼져 있는 어른과 아이들 사이의 권리관계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아동과 성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고려했을 때 아동이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은 어른들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 성인이 아동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만족할 수 없다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들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보다는, 그들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템포드 등의 연구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견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형식적 틀은 소규모 그룹 토론임을 밝혀냈다 (2003: 367). 권리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영국 대학의 교수 방법에 관한 지침 또한 소규모 그룹 토론을 적극 권장한다).

요약하자면, 아동권리의 법제화와 제도화는 실제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동반되지 않으면 무의미 하며, 자원이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는 가능하지 않다. 즉 아동인권의 실현은 아동에게 자원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동인권은 단지 상징정치(symbolic politics)에 머물고 말 것이다.

2. 차이

UN 아동권리협약 23조는 장애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리만은 23조에 명시된 장애아동권리가 비차별(non-discrimination) 중심의 조항일 뿐이며 이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인아동의 분리를 정당화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비차별을 넘어서는 통합(inclusion)을 지향하는 장애아동 권리(장애인권)를 주장한다 (Freeman, 2000: 282-283). 이러한 통합적인 교육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통합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주류 교육제도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뒤의 클리브스 초등학교의 사례를 참조).

알랜과 이안슨은 장애학생들을 주류학교에 통합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인 장애 협의 그룹 (the Disability Consultation Group)에 대한 관찰을 보고하면서, 경험을 통한 상호 이해와 이것이 가지는 긍정적 태도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장애가 없는 학생들이 장애학생들의 일상생활을 경험하면서, 장애학생들을 어렵게 하는 일상생활의 불필요한 '장애'물을 자각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해가

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Allan and I'Anson, 2004: 131-132).

알랜과 이안슨의 대표적 사례인 알리스테어라는 소년의 사례를 보자. 그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 대한 행동 그룹(Special Needs Action Group)이라는 장애 협의 그룹에 참여함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경험을 한다. 그는 단순이 장애인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룹에 참여 했으나 그런 감정적인 접근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들이 특별해(amazing)보였기 때문에, 그들과 친해지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난 그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안됐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애들은 우리와 똑같았고, 그래서 똑같이 대우받아야 해요. 그 애들이 동정 받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단지 그 애들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그 애들을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그룹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단지 다르게 보인다고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말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인걸요" (Allan and I'Anson, 2004: 133).

"A: 나는 정말 나쁜 애였어요. 매일 싸움만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아이예요. 내가 그들을 돌보아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J: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을까?

A: 처음에 그 애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들에게 내가 좋은 아이가 되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전에 전 매일 싸움질만 하고 바보같은 짓만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그들을 알게 되면서 전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 다시 시작하고 싶었고 좋은 아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J: 정말?

A: 정말요. 저는 모든 사람이 저를 알리스테어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지금 좋은 아이이고 싶은 걸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J: 정말 그 전에 싸움만 했단 말이니?

A: 그래요. 전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씩 제 스스로가 놀라워요. 이제 아무도 제가 매일 싸움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좋은 아이가 되고 싶은데, 가끔씩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도 있긴 해요. 전 제가 정말 제 행동을 많이 바꿨다고 생각해요. 전 정말 나쁜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좋은 아이잖아요, 지금은" (Allan and I'Anson, 2004: 133-134).

"전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똑같이 대할 때 그 사람들이 좀 더 나은 느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단지 그 사람들의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 장애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건 제가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줘요. 그리고 착한 아이가 되게 하죠" (Allan and I'Anson, 2004: 134).

알리스테어의 사례는 공통의 경험을 통한 상호이해의 과정이 민주적 시민의 도덕적 소양을 개발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서로 다름이 차별의 근거가 아니라 상호배려의 출발점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유럽 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가 지원한 유럽의 배제(Exclusion in Europe) 프로젝트에 참여한 벨기에, 핀란드, 영국의 학생들의 경험도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이 프로젝트는 어린 학생들의 사회적 배제를 다루고 있는 사회 단체들이 참여하고 사회적 배제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학생들은 사회운동단체를 통해 활동가들과 접촉하고,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실업자들, 폭력과 인종차별의 희생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 영국 학생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진(handicapped) 사람들과의 접촉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

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느꼈습니다"라고 말했다 (Osler and Starkey, 1998: 318-319). 이 학생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사회가 그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Osler and Starkey, 1998: 319).

영국의 경제사회연구위원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가 지원한 '장애아동으로의 삶'(Life as a Disabled Child)이라는 프로젝트를 연구 보고한 테이비스와 웃슨에 따르면 장애아동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다른 학생들과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Davis and Watson, 2000: 214). 성찰적인(reflexive) 청자가 장애아동의 필요와 능력에 대해 들어줄 수 있다면 그들이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문제는 장애아동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대화의 부족인 것이다 (Davis and Watson, 2000: 216-217). 더욱이 랜즈다운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채, 즉 그들의 능동적 의사표현과 최대한의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보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의 표현처럼 장애를 심화시키는 효과(a disabling impact)가 초래될 수 있다 (Lansdown, 1998: 224)3).

테이비스와 웃슨의 연구에서 보고된 윌버(Wilbur)의 사례는 아동의 행동양태를 주의 깊게 해석하고 아동이 자신의 관점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윌버는 아스퍼거 증후군(Asperger's Syndrom, 자폐성을 특징으로 함)을 가진 학생인데, 윌버의 행동은 대다수 선생님들이 특수학교로의 전학을 요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학교당국은 즉각 결정하기보다는 윌버의 행동양태를 한 학기 동안에 면밀히 관찰하여 그의 행동이 주로 다른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전학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윌버의 행동양태는 장애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Davis and Watson, 2000: 221-222).

같은 연구에 보고된 토미(Tommy)의 사례는 장애학생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려고 시도한 경우다. 새로운 학교에서 급우들에게 자신이 장애를 가지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스스로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동료학생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능동적 자기실현이 가능하기 위해서 교사, 부모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들의 적극적 지지가 있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Davis and Watson, 2000: 222-223).

테이비스와 웃슨은 다층적 접근(multi-layered approach)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지침과 입법에 근거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교사의 재교육에 적극 투자하고, 장애학생들의 문제에 대해 성찰적으로 접근하며,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등 다양한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Davis and Watson, 2000:225)4). 장애아동과의 의사소통과 협의에 기초해서 아동들 스스로를 자기권능화(self-empowerment)하는 것, 그리고

3) 비장애인에게는 사소한 일이지만 장애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접근하기는 하지만 장애발생 원인을 비극적으로 묘사하는 것(tragedy discourse)도 장애학생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MacArthur et al. 2007: 111).

4) 뒤에서 다룬 성적 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에 대한 대책도 이러한 다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 영국 정부의 지침은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한 자기권능화는 어른과 아동들 사이의 협력(cooperation)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Davis and Watson, 2000: 226).

성적 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은 전체 사회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영국정부는 2007년에 제정된 성적지향에 관한 법률(the Sexual Orientation Regulations)을 통해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차별이 법률적 조치에 의해서 사라지지는 않는다.

2007년 9월 노동당 정부(아동, 학교 가족 부, the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과 함께 동성애 학생들 또한 “모든 아동은 중요하다”(Every Child Matters)라는 이름의 일련의 정책 문건에서 제시된 아동복지향상 목표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교사용 지침(“학교에서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을 예방하거나 그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Homophobic Bullying in Schools’)을 출판했다.

지침은 성적 지향성 때문에 발생하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피해학생의 높은 결석률, 학업성적에의 부정적 영향, 자살기도 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것은 정부가 제시한 아동복지에 중대한 장애물임을 인정했다. 지침은 초등학교에서도 (직접적이든 또는 동성애 부모나 가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든) 성적지향성에 따른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언어폭력의 경우 동성애혐오적 발언을 하는 학생에게는 단계적 조치(처음의 약한 조치가 언어폭력을 중지시키지 못하는 경우 좀 더 강도 높은 조치로 옮겨가는 형식)를 취하도록 했다:

1. 동성애 혐오적 언어가 학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주지시킨다; 2. 괴롭힘이 다시 발생했을 때, 동성애적 언어가 모욕적(offensive)임을 분명히 하고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다시 강조한다; 3. 다음 단계는 동성애적 괴롭힘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4. 개선이 없을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내져야 하고, 교사는 그들의 언행이 왜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 더 상세하게 이야기 해야만 한다; 5. 다음 단계는 학생에게 동성애 혐오적 언행을 계속 했을 경우 받게 될 제재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다; 6. 부모나 보호자를 학교에 오도록 하고 학생의 태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지침은 동성애 학생에 대한 괴롭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문제를 밝혀내야한다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어려운 원칙을 확인한다. 이것은 일반적 괴롭힘 대책에 동성애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포함시켜야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단지 동성애 학생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차이에 관계없이 학생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조성을 강조한다. 또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교사나 스텝만이 괴롭힘을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넘어 모든 교사와 스텡에 대해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 교육할 필요를 명확히 한다. 동시에 성적 소수자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과과정에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폭력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 모든 것과 관련해 외부단체(레즈비언/게이 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동성애자 스텡, 부모 등 역할 모델(role models)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입장에서 교실의 모든 학생이 이성애자일 것이라는 가정을 하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성적지향성에 따른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또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문제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될 수 있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종교와 관련된 통합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많은 수의 학교가 교회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종교적 색채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학교의 이름이 성인의 이름을 본딴 학교가 많고 (예를 들어 St. George Primary School),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의 상징에 십자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조회시간에 기도를 하는 등 종교적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성적 소수자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매우 완강해서 동성부부의 입양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운영하는 입양기관의 경우 법률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the Sexual Orientation Regulations, 2007). 그리고 9.11 이후 전반적 사회분위기가 이슬람교도를 잠재적 테러리스트와 동일시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종교적 차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소한 교과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종교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교과과정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시간(RE, religious education)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등 세계 종교에 대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오랜 이민의 역사와 영국 사회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적인 전통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교과과정에서의 균형 잡힌 교육이 사회전반의 인종적, 종교적 차별이 완전히 종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아동인권과 관련해 종교의 자유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녀의 종교자유 박탈이나 관련된 문제로 입양에 의한 종교선택의 자유 박탈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아동의 종교선택의 자유라는 논의가 주로 이슬람 신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또 다른 종교적 차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3.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

총체적 삶의 돌봄이란 단지 학교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에 걸쳐서 아동의 복지와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까지도 포함한다.

2006년 9월 19일자 가디언(The Guardian)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17세 이하 청소년들의 우울증(depression)과 행동장애(behavioral problems)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2006] 영국 의학 협회(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의 보고에 의하면 11-16세 청소년 중 10% 이상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신적 문제(mental disorder)를 가지고 있다. 백만 명 이상의 아동이 우울증, 폭력, 자해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똑바로 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가이다. 어린이의 우울증 문제는 195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1980년대 그 숫자는 2배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그 후 다시 배로 증가했다. 비록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이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보다 세배나 더 큰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성별과 계급에 관계없이

많은 아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Jenni Russel)

학생들이 노출된 정신적 건강의 문제는 사회적 조건, 즉 승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쟁적 분위기, 끝없는 수업과 시험에 시달리는 한국의 학생들에 더욱 큰 문제일 수 있다. 기본적인 권리의 박탈이 더 큰 권리의 박탈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또는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은 여전히 정신적 건강의 문제를 권리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개인의 부적응으로 접근하고 있다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은 감당하기 어려운 학습량과 시험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온다는 점에서 감당할 만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빈곤의 경우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흔히 빈곤 문제에 접근할 때 절대적인 물질적 빈곤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절대적 빈곤선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제도화된 틀 안에서,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 학교라는 공간에서 빈곤이 어떻게 경험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빈곤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낙인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학교 내에서 아동빈곤에 접근할 때 매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에트리는 그녀의 조사연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물질적 박탈보다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소외임을 보여 준다 (Attree, 2006: 59).

“에이미: 문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으며 나도 그래야 한다고 느끼게 되요. 다른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면 나도 그래야 한다고 느끼죠” (Attree, 2006: 59).

이미 주어진 사회적 조건에서 물질적 빈곤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에게 그것은 부차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물질적 빈곤이 동반하는 사회적 배제는 더 큰 고통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무료급식과 같은 조치로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순간 더 큰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권리개념에 아동의 적극적 의사표현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4. 권리구제 (UN 아동권리협약 12조)

학교현장에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되었다. 많은 경우 관료적, 형식적 편의에 의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부당한 편견과 낙인찍기로 특정한 학생을 학교와 사회의 보호 밖으로 밀어내기도 한다. 아동이 아직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자신의 ‘객관적’ 이해(interests)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동의 ‘일탈행위’에 대해 그것의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려 하지 않은 채, 즉 아직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쉽게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쉽게 ‘비정상’으로 낙인찍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이러한 성급한 낙인찍기와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 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며 학교와 교사, 그리고 부모의 관심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동 스스로의 주장을 들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이다. 전문가 집단 간 상호 협의는 아동의 입장에서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아동의 입장 이해하려는 학교와 지역공동체로부터의 접근이기 때문에, 아동이 자신

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내 권리 구제의 경우 해당 학생의 권리 구제는 다른 학생들의 권리 침해와 관련을 갖기 때문에 제도화된 구조에서, 전문가 집단의 참여하에 학생의 주장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의 문제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다. 교육의 관점과 사회복지의 관점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스테드 등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학생인권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 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Stead et al., 2004: 43). 1998년부터 스코틀랜드 정부는 ‘퇴학 조치에 대한 대안’ (Alternatives to School Exclusion)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 간 상호연계(inter-agency cooperation)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학생의 퇴학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교 당국과, 사회복지사, 교육심리학자, 경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관련단체 등이 참여한다. 그들의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집단 간 협의체는 각각의 케이스에만 한정되어 운영되는 경우와 장기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스테드 등에 사례 조사에 따르면 월래스 시(Wallace City)처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양한 대화 창구를 유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와 일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때 좀 더 유연하고 혁신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방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했다.

“간단히 말하면, 존은 방화를 한 것 때문에 학교로부터 영구히 축출될 위험에 처해 있었고, 전문가 집단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그가 연루된 세 번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나에게 분명한 것은 존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애정이라는 것이었다.....그것을 하기 위해서 [존에게 무조건적인 애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중지했다 (월러스 시티의 한 학교의 교장)” (Stead et al., 2004: 47).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중지한다는 것은 존을 퇴학시키지 않고, 화재 방지 공무원의 정기적인 방문을 받도록 하고, 존과 그의 가족에게 필요한 부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정은 상당한 위험을 동반하는 것인데, 전문가 집단 간의 장기적이고 개방된 토론과 대화를 통해 축적된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아동의 지원하는데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다. 특정한 학생, 또는 케이스에 국한된 전문가 협의체(Douglasshire Council의 예)는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접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방된 협의체가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청소년담당 사회복지사(youth worker)가 우리를 한테 왔습니다.....저는 그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그는 그냥 우리 옆에 앉더니 우리하고 게임을 하면서 같이 놀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 그리고 저는 지도교사가 우리 그룹 안에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월러스 시티의 루크)” (Stead et al., 2004: 48).

스코틀랜드는 1995년의 ‘아동 법’(the Children Act)과 1996년의 ‘아동 청문회 규칙’ (the

Children's Hearings Rule)을 통해 위에서 지적한 특정한 사안에 대한 문제아동의 입장을 청취할 수 있는 '아동청문회'를 제도화했다. '아동청문회'제도를 통해 보장된 아동의 절차적 권리의 다음과 같다.

1. 서면을 통해 청문회에 대해 사전에 공지 받을 권리 (아동 청문회 규칙, 1996, 규칙 6)
2. 청문회의 모든 절차에 출석할 권리 (스코틀랜드 아동법 45조 1항)
3. 청문회를 하게 된 근거를 설명 받고 그것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할 권리 (스코틀랜드 아동법 65조 4항)
4.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 (아동 청문회 규칙 11 1항)
5. 청문회의 결정사항과 그것의 근거에 대해 들을 권리 (아동 청문회 규칙, 규칙 20 5항)
6. 결정사항과 그것의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아동 청문회 규칙 21 1항 b)
7. 청문회 결정에 대해 항소(appeal)할 수 있는 권리 (아동법 51조 1항)
8.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공지 받을 권리 (아동 청문회 규칙, 규칙 20 5항 c)
9. 감독(supervision) 요청에 대한 재검토의 권리 (아동법 73조)⁵⁾

제도와 제도 운영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괴리를 좁혀가는 과정이 제도의 개선과 발전이다. 스코틀랜드의 아동 청문회 제도도 예외가 아니다.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법규와 규칙에 의해 청문회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공지받을 권리가 보장되었지만 그 것은 부모의 권리이지 아동의 권리가 아니었다. 부모는 아동과 공지받은 내용을 공유할 의무가 없다. 이것은 청문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둘째, 첫 번째의 경우와는 상반된 방향에서, 1996년의 아동법에 의해 아동이 청문회장에 부모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거려할 때 부모를 청문회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아동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는 마치 우리가 단란한 가족인 것처럼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동작과 시선으로 나에게 가하는 압박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학대한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건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하죠;

저의 양아빠는 언제나 기침을 하곤 합니다. 저에게 경고를 하는 작은 기침요. 그는 청문회에서 그런 기침을 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Hallett and Murray, 1999: 37).

셋째, 서면으로 된 청문회의 이유와 절차, 그리고 아동의 권리의 공지가 여타의 정보나 지식이 함께 제공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종종 사회복지사의 도움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제공되는 정보가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적 전문용어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청문회의 패널들의 자질문제 (그들과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큰 시각차가 존재한다), 법률적 대리인을 세우는 데 따르는 문제 (법률적 대리인을 세우는 것은 아동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

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청문회 절차를 법률적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아동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등이 지적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절차적(procedural) 권리만을 보장한다고 실질적(substantive)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잘 알려진 사실을 확인해 준다. 권리는 실질적 자원과 서비스, 그리고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 즉 권리는 자원과 정보, 그리고 교육을 통한 능력(capabilities)의 배양과 결합되어야 한다.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아 센이 능력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아동 청문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논평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종종 우리가 자원과 관련해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기관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무단결석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질려버린, 그러나 그것을 다룰 어떠한 자원도 가지고 있지 못한 학교와 같습니다;

어떤 제도도 지금의 청문회 제도처럼 제대로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다면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필요하지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을 때조차 그 누구도 적절한 자원에 접근할 수 없을 때, 제도는 강화될 수 없다;

이것[아동 청문회]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제도이지만, 배분된 자원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 잠재력은 극대화되지 않는다" (Hallett and Murray, 1999: 49).

マイ클 프리만의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자원의 배분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지 않으면 향상된 법적 틀을 창출하고 아동의 확장된 권리를 제도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궁극적으로 아동 권리의 문제는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문제로 해결된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는 편이 낫을 것이다" (Freeman, 1992: 61)

5. 감당할만한 교육

도덕적 시민의 육성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반드시 교육의 직접적 목표인 효율적 지식의 전달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화이트헤드와 클로우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습방식은 자율적으로 조직된 소규모 그룹 토론이며 이러한 소규모 그룹은 생각(ideas)과 기술skills)을 쉽게 공유하게 함으로써 지식 습득을 용이하게 한다. 학생들이 동료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들을 편안하게 하며(기존의 권리관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그들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얻어진 실천적 지식을 교과과정을 이해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은, 교사의 일방적 지식전달에 비해 학생들 스스로가 수업과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Whitehead and Clough, 2004: 220-221, 225).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토론하고 다른 학생들로부터 나와는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때 가장 학습효과가 높다"

5) Hallett and Murray (1999: 35-36).

“그룹 안에서 더 잘 이해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 (Whitehead and Clough, 2004: 221)

학교가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학교의 일차적 목표는 지식의 전달이다. 그러나 지식의 전달에서 조차 참여적, 민주적 방식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학습효과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라는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다.

브래디에 의해 보고된 아일랜드 최대의 아동보호조직인 베나도스(Barnados)의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은 참여적 교육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이니셔티브는 어른들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학습방식과 내용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자발적 참여와 토론은 높은 출석률과 학습성과로 나타났다 (Brady, 2007). 이것은 교육을 권능부여(empowerment)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브래디의 주장처럼 근래에 유행하고 있는 소비주의적 행위(consumerist activities)와는 차별적이 것이다 (Brady, 2007: 37). 소비주의적 담론에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있을 뿐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대화와 토론,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 능력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앨더슨은 국가적 차원의 교과과정 설정은 학습과정에서의 학생과 교사가 협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아이들은 스스로 조직화한 학습(self-organized learning)과 놀 이를 통한 실험(playful experiments)을 통할 때 가장 빠르게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Alderson, 1999: 189).

위의 주장은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모리(MORI, Market & Opinion Research International; 영국의 두 번째로 큰 여론 조사기관)가 1998년 실시한 11-16세의 4,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the Campaign for Learning이 의뢰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습 방법을 보여준다. 절반 이상의 학생이 그룹을 통한 학습(learning in group)을 가장 선호했고, 그 다음은 학습내용을 실제적인 것에 적용하는 방식(learning by doing practical things)이었다 (Osler and Starkey, 1998: 316-317).

위에서 언급된 참여적인 교육방법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교교육이 시험을 위한 (즉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교육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드바인과 그의 동료들은 영국의 교육현실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테스트를 위한 교육(teaching to the test)은 교육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며, 교사와 학생이 미리 정해진 문제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쟁점과 기술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학교의 교과과정이 가진 범위와 활력을 축소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시험결과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성취와 적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와 사실을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 (Devine, et al., 2007: 58-59).

위의 비판적 논평에도 불구하고 영국 학생들이 받는 학습부담은 우리의 학생들에 비하면 가벼운 편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글자 습득과 읽기 학습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의 에식스주에 위치한 캔달 초등학교(Kendall Church of England Primary School)의 학생평가 자료에 근거했다).

영국의 읽기 교육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a-z까지의 알파벳을 외우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일상에게 접할 수 있는 간단한 사물의 이름, 본인의 이름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반복적으로 같은 문자를 여러 단어에서 확인함으로써 그 문자가 가진 음과 다른 문자와의 조합 방식을 터득한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읽기 교재는 글자보다는 그림이 많은데, 보통 1장의 그림에 짧은 문장 하나가 전부이다. 그런데 그 문장이 세심한 고려에 의해 작성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단계별로 발전하지만, 초급 단계의 교재는 관사 a, 동사 is 등 기초적인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단계별 단어의 수준과 수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배려되어 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모든 알파벳의 음과 알게 되었을 때(1년 정도가 걸린다) a-z까지의 순서를 읽히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쓰기 단계로 넘어간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상위권 학생들이 학습과정의 기준이 아니라 하위권 학생이 기준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학생이 교사가 원하는 수준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뒤처지는 학생을 만들지 않겠다는 원칙이 전제되어 있다 (모든 학습의 전제는 어린 학생들이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놀이와 학습의 결합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상호작용이 부재한 교육, 시험 위주의 교육의 위기가 거론되는 영국 교육제도의 단면이 이러하다면, 우리의 교육은 어린 학생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의 더미들을,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한 그 어떤 고려도 없이,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6. 개인+ 공동체

학교는 의사결정능력(the capacity for decision-making)을 길러주는 곳이지만 중요한 결정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곳이라는 지적이 있다 (Morrow, 1999: 160; Alderson, 1999: 186). 앞에서 학생의 참여를 통한 학습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연구보고를 인용했다. 오슬러와 스타키는 UN 아동권리협약의 29조 라항(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에 근거해 학습과정에의 참여를 넘어 학교운영과 의사결정에의 참여로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Osler and Starkey, 1998: 314).

영국은 많은 경우 형식적으로 학생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와이즈가 그레이셤 학교(Graysham School) 예를 통해 지적한 것처럼 학생들은 학생협의회(school council)가 실질적인 정보가 결여된 상태에서 운영되며 협의대상에서 중요한 문제는 제외되고, 설사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해도 실행되는 것은 없다 주장한다(Wyse, 2001: 211-212).

교사들의 경우 학생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보장할 경우 학교의 규율이 무너지고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들의 다양한 실천과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오슬러와 스타키는 일방적으로 제정된 규칙보다는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제정된 학교규칙이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더 효과적임을 한 프랑스 학교의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Osler and Starkey, 1998: 318). 또한 학생들의 출교조치가 감소하고 학교규율이 향상된 예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학교생활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킨 학교들임을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한다 (Olser and Starkey, 1998: 320-321). 오슬러와 스타키에 의해 인용된 현직 교장선생님의 증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교운영과 관련

된 결정권의 공유(power-sharing)는 초기에 상당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 괴롭힘(bullying)과 인종차별 같은 학교 내 문제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Osler and Starkey, 1998: 323-324).

테일러와 그녀의 동료들은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초등학교에서의 토론을 통한 학생들 간의 상호 작용 중심의 교육이, 교사들의 우려(학생들이 어른들의 권위에 도전하게 할 수 있다는)와는 달리, 급우들에 대해 더욱 관용적이고 상대를 존중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Taylor et al., 2001: 140).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동료학생이 중재자로 개입해서 서로 화해시키는 동료중재 (peer mediation)는 도덕적 책무를 계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9-11세의 어린이들에게 중재의 원리를 소개하고 역할 놀이를 통해 그 원리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어린이들은 다툼을 목격하면 그것에 개입할 의미를 받아들여야 했다.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어린이들은 다툼을 목격하면 그것에 개입할 의미를 받아들여야 했다.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어린이들은 다툼을 목격하면 그것에 개입할 의미를 받아들여야 했다.

“누구든 놀이터에서 싸움을 하는 아이들을 발견하면, 나는 그곳으로 가서 실제로 싸우는 것인지 장난인지 를 확인합니다. 저는 제가 중재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지만 만약 그들이 정말 싸우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중재를 원하는지의 여부를 물어봅니다” (Osler and Starkey, 1998: 322).

중재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 .

“일단 중재가 받아들여지면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라야 한다.

갈등 당사자 1은 상황을 설명한다.

상황설명 중 그것을 중단시키거나 육설을 하거나 타자를 잘못을 돌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 해야 한다.

중재자는 묘사의 요점을 정리해야 한다.

갈등 당사자 2가 상황을 설명하고 당사자 1의 경우와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중재자는 당사자 1에게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본다.

당사자 2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

중재자는 양방으로부터 제기된 문제의 목록을 작성하고 양방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요구한다.

양방은 합의를 도출할 것을 요구받는데 만약 합의에 이른다면 문서형식의 합의문을 작성한다” (Osler and Starkey, 1998: 323)

7. 연대와 네트워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민적 자질의 육성은 교육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특히 학교 교육은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하며, 교육은 토론을 통한 상호이해의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Devine, et al., 2007: 54-57). 권리에 대한 서구적 개인주의적 담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권리 그 자체도 개인이 아닌 연대 (solidarity) 또는 관계적인 것 (relative)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Morrow, 1999: 150-151, 166-167). 권리에 대한 어린이들 스스로의 의견을 연구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타자와 분

리된, 그리고 개별화된 자율적, 합리적 개인으로 행위하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서로 연관된 사회적 모델이라고 개념화될 수 있는 권리개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rrow, 1999: 166).

이러한 관계적 또는 사회적 모델의 권리개념에 근거한다면 교사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나 학교 행정담당자가 아니라 돌봄의 사회관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Northfield and Sherman, 2004: 292). 교실은 사회성(sociability)을 키워야하는 공간인 것이다 (Northfield and Sherman, 2004: 293). 앞에서 누누이 지적한 민주적 시민의 양성은 학습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Northfield and Sherman, 2004: 295), 교실은 차이와 타자성을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이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는 장소인 것이다 (Northfield and Sherman, 2004: 296). 그러나 공동체를 통한 사회성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은 온전히 교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학급(역으로 말하면 교사의 중원)과 제반의 지원 시설 제공과 전문인력(교육심리학자, 의사 등등)의 협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뒤의 클리브스 학교의 사례는 학교, 그리고 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협조, 그리고 학부모(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교사의 역할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에서는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협력이 권장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경쟁원리를 학교사회에 도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국은 그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다. 시장에서의 공급자로서의 교사,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학생이라는 담론이 학교의 재편을 주도하면서 교사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교사들은 교권의 침해를 자신들의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교사로서의 권리가 학생들로부터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에만 주목한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의 지지가 없는 교사의 지위는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학생의 지위를 인정하고 학생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교사를 학생이 지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 마디로 교사의 인권은 학생의 인권 신장 없이는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 강하게 말하면, 교권은 학교안의 모든 결정이 학생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를 바탕하지 않고서는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은 사회적이며 관계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학교당국으로부터의 자율성은 학생과 교사간의 자율적인 토론에 기반할 때에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학생의’ 권리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뉴질랜드에서의 표본조사(학생과 교사의 권리에 대한 인식 비교)에 의하면 교사는 서비스와 자원의 제공(provision)과 보호(protection)에 관한 권리를 우선시하지만, 학생의 경우 참여(participation)의 권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Taylor, et al., 2001: 148, 표, 149, 그림). 이러한 차이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여주는 문화의 부족에 기인한다 (Taylor, et al., 2001: 153).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결정할 권리가 아니라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바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대화와 토론은 양자 사이의 차이를 긍정적 방향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 (Taylor et al., 2001: 140).

8. 사회권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소극적 권리라면 아동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는 적극적 권리이다. 물론 앞에서 지적했듯이 소극적 권리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의사반영이 없는 권리는 매우 제한된 것이다. 문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조차 매우 수동적으로 주어지거나 아예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있다.

이러한 적극적 권리 중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보장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드바인 등이 주장하는 바처럼,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을 배우며 사회성을 익히고 자연생태와 자신들이 조화롭게 생존할 수 있다는 생태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Devine, et al. 2007: 56-57).

한국의 학교 현실과 비교하면 영국의 학교는 상대적으로 넓은 놀이공간과 녹지가 확보되어 있고 교과과정 또한 놀이와 결합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증가와 어린이 성추행범의 증가 때문에 방과 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권리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와 지방정부,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이 요청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많은 도시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가에 차량 진입금지를 위한 캠페인, 또는 걸어서 등교하기 캠페인 등)6).

최근 몇 년 동안 영국에서는 학교급식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 중 하나였다. 2006년 교육-기술부는 '지속가능한 학교'(sustainable schools)에 관한 협의 문건(consultation document)을 발간했는데, 그 중 음식과 음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모든 학교는 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동물 복지에 대한 확고하게 근거하고, 지역의 공급자들에게 더 많은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가능한 한) 현장에서 생산되고 준비된 건강하고, 지역적이며 지속 가능한 음식과 음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Sharp, 2007: 16).

2006년 9월부터 정부에 의해 도입된 영양기준(nutritional standards), 정크푸드 또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점심시간에 판매하는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이 아침의 쉬는 시간에 정크 푸드를 사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7년 9월부터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 그 결과를 알기에는 이르다. 문제는 정부의 위의 방침과 학교로의 시장원리 도입에 따른 자금압박, 그리고 이에 따라 외부음식 업체와 공급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사이의 모순이다. 일단 현행 공급업자들은 학교에의 공급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크푸드가 아니면 이윤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Sharp, 2007). 서로 모순된 정부의 정책결정 사이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가 로컬 푸드 운동같은 환경운동과의 적극적 연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실제로 영국 각지에는 로컬 푸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6) 최근 영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어린이 비만이다. 단순히 개인 또는 가족의 식습관 또는 유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많다. 패스트 푸드, 정크 푸드로 대표되는 거대 식품업체의 지배뿐만 아니라 개인소유의 차량의 증가로 도보와 자전거에 의한 이동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도 원인중의 하나다. 자전거 타기 또는 걷기를 권장하는 각종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Cahill, 2007).

<클리브스 학교(the Cleves School)의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 사례>

런던의 뉴햄(Newham, 매우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보통 초등학교. 이 지역은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학교의 목표

모든 인종, 성, 계급의 개개 아동과 학습의 필요가 제대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지며 가치 부여되는 환경의 조성
각각의 학생에게 그들의 공간을 제공하고 소속감을 길러주는 환경 조성
모든 아동과 어른들에게 긍정적인 자기존중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학생들에게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학습

교육방법

4개의 구획된 공간(wings)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은 120명 한도의 저학년 학생들에게 배정된다. 120명 학생에 대해 선생님을 비롯한 스텝은 12명. 각각의 구획된 공간은 4명의 교사 외에 7명의 보조교사를 두고 있는데, 특별한 필요가 있는 학생들 돋는 역할을 주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필요가 요구되는 학생에게 일대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집단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방식의 팀 교육(team teaching)은 통합적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별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고립되어 있지만 개방적 형태의 팀교육 하에서는 비슷한 조건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다. 백인 학생들이 사이의 흑인 학생의 경우도 고립되지 않을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습을 스스로 조직하고 자연스럽게 그룹을 만든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은 쉽고 효율적으로 각각의 그룹을 만들었다. 더 각각의 팀의 12-13명의 교사는 팀으로 작업하는데, 교사들은 혼자 모든 영역의 교과과정을 준비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뉴햄지역 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y)은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 돋는 전문가들을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도움을 준다. 때때로 자폐증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들처럼 교육심리학자 학교 간호사와 의사가 배치되어 있다.

각각의 구획된 공간은 중앙에 교실을 중심으로 네 개의 교실로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교실은 가구를 많이 배치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능동적 학습

학생들은 매일 아침 하루의 계획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몇 개의 과목 중에 자신이 원하는 과목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계획에 따라 교실을 옮겨 다니면 그룹을 형성하고 학습에 참여한다. 만약 한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다른 교실로 옮기게 된다.

게 한다. 한 학생이 좋아하는 과목만 계속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역시 교사의 지도를 통해 수정하도록 한다.

모든 학습이나 활동은 둘 또는 그룹 별로 이루어진다.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쓰고 읽을 수 있을 뿐인데, 토론을 통해서 서로간의 생각을 분명히 하고 확장시키며 서로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스스로의 좀 더 분명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말하기는 대단히 중요한 학습의 방법으로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서로 도울 수 있게 한다. 대화를 통해 학습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결론이다. 시끄러움을 인내할 수 있고 그 러한 조건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컴퓨터는 개인이 아닌 조별로 배당되며 제시된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서로 순서대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통합교육의 원리

클리브스 학교는 통합적 교육을 목표로 하는데, 통합적 교육은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수행되고 발생하는 모든 일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 원칙이다. 즉 조회나 점심시간, 도구나 가구등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접근 등 모든 면에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차이가 존중되고 고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종교교육에서는 세계종교에 대해 명확히 가르치고, 차이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유사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클리브스 학교의 교육은 경쟁이 아닌 협력과 협동을 높이 평가한다. 개인이 아닌 그룹별 학습 활동은 협동의 원리를 실현하는 좋은 방법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모들 중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음악가, 예술가, 배우, 축구선수 등-이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의 역할을 하며 학교 공간은 성인 스포츠 클럽으로 활용되며, 교사가 특별한 필요가 요구되는 학생들의 부모와 개별적 면담을 할 수 있는 부모 면담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같은 공간은 여성 지원 그룹 (the women's support group)과 학부모 지원 그룹 (parents' support group)이 함께 사용한다.

[발표3]

'학생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 만들기 지침' 초안

인권운동사랑방 (hregang@hanmail.net)

□ 전체 구성 □

- I. 전문(全文)
- II. 총칙
- III. 기본 원칙
- IV. 학생의 기본적 권리
- V.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 보장
 - 1.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 2. 차별 금지
 - 3. 교육에 대한 권리
 - 4. 학생 자치와 참여
 - 5. 신체의 자유
 - 6. 사상, 양심, 종교
 - 7. 학생의 표현
 - 8. 사생활과 개인정보
 - 9. 정보 접근
 - 10. 건강
 - 11. 안전
 - 12. 쉼, 놀이, 문화
 - 13. 사건 조사와 징계
 - 14.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
 - 15. 권리를 지킬 권리
- VI. 학생 인권 침해 발생 시 해결 조치
- VII.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체계
- VIII. 학생 인권 수준에 대한 정기적 점검

I. 전문(全文)

■ 학생 인권이 선 자리

사람은 누구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인권의 대원칙은 여전한 폭력과 차별,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비껴가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은 어리고 불완전한 존재로 여겨져 권리의 주체라기보다는 부당한 통제의 희생양이 되곤 한다. 입시에서의 성공만이 강조되는 경쟁적인 교육 풍토와 오랜 시간 굳어져온 권위주의 문화는 학생의 인권이 숨 쉴 틈을 구조적으로 틀어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조회개

학생은 교육을 통해 사람됨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자연과의 공존 등 인류의 모든 구성원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의 학교 현실을 살펴보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이러한 교육목표가 너무나 초라하게 버려져 있지는 않은지 자문하게 된다. 학생의 인권권이 제 대접을 받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학생이 다양성을 존중받으면서 생각을 키우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열어주지 못한다. 차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입을 틀어막고 양심에 반하는 생각을 거짓으로 고하고 부조리를 눈감아야 하는 학교에서 학생이 권 있다'는 오랜 깨우침을 다시 되새김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와 사회가 외면한 학생의 인권을 본디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학생들의 힘겨운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학생 인권은 특별한 날에만 앵무새처럼 울어 대는 미사여구이거나 극단적인 사案에 직면해 불안과 분노를 잡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만 활용되 어서는 안 된다. 모든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구조와 문화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설계도의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다.

■ 이 지침의 위상

○ 이 지침서는 국제권리장전과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들을 학교 현장에 대입한 세밀화다. 학생 인권에 관한 세부 지침은 학교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학생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지침서는 학생 인권을 지지하고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부족한 현실에서도 학교와 그 구성원들이 일구어낼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제안서다. '학교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온 관행에서 벗어나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은 법률에 의한 강제보다 더 큰 변화를 놓을 수 있다.

○ 이 지침서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불러내는 주문이다. 자유, 평등, 정의, 차이에 대한 존중 속에서 학생은 생활하고 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자유권과 사회권, 소수자의 인

권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인 인권 지침을 통해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 학생의 인권도 보장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밑그림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 이 지침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지침서는 학생 당사자를 비롯해 학생의 인권을 옹호해온 교사들과 인권단체들의 고민과 실천의 소산이다. 학생·교사와의 공동 워크숍, 관련 단체 방문 조사, 인권단체와 언론에 보고되었거나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에 의뢰된 관련 사례들에 대한 검토, 학생 인권 전문가에 대한 서면 의뢰, 선행 연구 논문과 실태 보고서, 토론회 자료집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먼저 사례를 발굴했다. 발굴된 사례는 다시 학교 상황에 맞게 15가지 유형으로 묶였으며, 학생 인권을 대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으로 탄생했다.

■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

학생 인권은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유보되어야 할 것으로 당연시되어 왔다. 이 지침서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 주체로서의 학생 : 권리를 유보하고 통제받는 데 길들여져 온 학생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기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 지침서가 학생이 자기 권리의 인식하고 권리에 대한 부당한 억압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구체적인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옹호자로서의 교사 : 교사는 학교의 변화를 불러오고 학생의 권리 행사를 지지하는 옹호자가 될 수 있다. 이 지침서는 학생 인권에 관한 교사의 감수성과 의식, 실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 인권의 실현을 위한 학교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이 지침서를 활용하여, 교사가 옹당 감당해야 할 뜻보다 더 크게 짊어져야 했던 부담을 벗고 학생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책임자이자 지휘자로서의 학교당국 : 학교당국은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 주체이자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일구는 변화를 이끌어나갈 지휘자이기도 하다. 학교마다 처한 조건이 다르고 그에 따라 실천 가능한 계획과 변화의 흐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학교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성취되기 힘든 요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학교당국은 조건의 차이와 권한의 한계 속에서도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분명한 지향 아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계획과 오랜 기간 지속되어야 실현될 계획을 함께 짤 수 있어야 한다. 이 지침서를 통해 학교당국이 변화 계획을 수립하고 변화 흐름을 지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총칙

1. 목적

이 지침서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준수되어야 할 학생 인권의 세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학생 인권이 증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 학생 :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국·공립, 사립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입학과정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립학교에는 대안학교도 포함된다.

• 보호자 : 학생의 부모나 혈족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기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돋고 지지·지원해주는 후견인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을 이른다. 학생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가족' 외에도 매우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자라고 있다. 보호자는 교직원, 학생과 더불어 학교 운영의 한 주체이다.

• 징계 : 학교의 선도(징계)규정 위반이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학생에게 과하는 제재로서, 사건 발생 이후 선도(징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 진행되는 처벌을 포함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이나 회부되지 않더라도 사건과 관련되어 행해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북출신 이주민 학생 :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 남으로 삶터를 옮긴 학생을 뜻한다. 혼히 탈북자 자녀, 새터민 자녀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의 동기는 다양하다. 북을 떠난 동기가 무엇이든, 북을 떠나와 새로운 곳에서 삶터를 일구었다는 의미를 담아 '북 출신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성소수자(이반) :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아우르는 말이다. 이미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아 성소수자로 정체화한 사람뿐 아니라 성 정체성을 탐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이성애만을 '일반(一般)'적인 감정으로 인정하는 편견에 대한 문제 제기의 의미로 '이반(二般)'이나 다름을 의미하는 '이반(異般)'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 인종적 소수자 : 이주 동기와 시기에 관계없이, 부모 양쪽 혹은 한쪽이 다른 나라에서 나고 자랐거나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부모 모두가 이주노동자인 사람, 부모 중 한쪽이 이주 노동자인 사람, 부모 중 한쪽이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사람, '혼혈인' 등이 모두 포함된다.

• 비혼모(非婚母) : 결혼을 하지 않고 임신했거나 출산한 여성의 이름이다.

3. 학교당국의 기본 의무

학교당국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가 있다. 그것은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로 다음과 같다.

○ 존중의 의무

: 학교 당국은 학생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이 권리를 누리는 데에 방해요소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을 교육활동에서 배제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아리 설립을 불허하여 학생의 결사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하여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 위험한 놀이시설을 방치하는 일 등은 학생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합당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입증 없이 두발규제 등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교칙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조치에 해당한다.

○ 보호의 의무

: 학교당국은 제3자에 의해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교사나 친구·선후배에 의해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학생 보호와 해결 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피해학생이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일, 수련회 장소에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하지 않아 사고 위험에 학생을 노출시키는 일 등은 보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실현의 의무

: 인권은 모든 학생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향유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학생 인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학생이 알아야 할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 인권에 관한 교육과 행사를 기획하는 일, 학생 인권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학교당국은 실현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해야 할 책임도 아울러 갖는다.

학생 인권을 위한 노력과 실천은 오롯이 학교의 몫으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학교를 넘어 가정, 지역사회, 교육당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교 밖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힘써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수준에서 학생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4. 학생 인권 지침의 이행을 위한 권한

이 지침의 이행을 위해서는 학교당국은 물론 학생 인권옹호자로서의 교사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학교당국과 교사는 이 지침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생 인권을 보호, 존중, 실현하기 위한 학교당국과 교사의 요청은 존중되어야 한다.

○ 학교 당국에 대한 교사의 권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교사이다. 교사는 학생 인권의 가장

든든한 응호자일 수도 있고 학생 인권을 저해하는 조치를 전달, 집행하는 집행관이 될 수도 있다. 때로 교사는 자신의 교육적 신념과 인권의식에 반하여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학교당국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압력을 받기도 하고, 그릇된 교육적 신념과 인권의식의 부족으로 부지불식간에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 전체를 향해 '가해자'라는 화살을 돌리는 것은 교사의 학생 인권 응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 지침의 이행을 위해서는 교사가 변화의 촉매자로서 합당하고도 충분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학교의 구조와 교육정책에 눈감는다면 개별 교사들의 노력은 이내 어려움에 처하고 물거품으로 변하기 쉽다. 교사는 학생 인권의 실현을 위해 학교당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하며, 학교당국은 교사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 교육당국에 대한 학교당국의 권리

이 지침의 이행을 위해서는 지침을 준수하려는 학교당국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교육당국의 지원과 법적·행정적 여건 조성 노력이 필수적이다. 학교당국은 학교 구성원에게 현재 조건을 인내할 것을 요구하기보다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교당국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 조정과 예산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교육당국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당국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III. 지침의 기본 원칙

-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뽑은 10가지 쟁점을 풀는 열쇠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 <인권연구소 창>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가 보완 예정.

IV. 학생의 기본적 권리

모든 학생은 아래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1. 존엄한 인격체로서,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
2.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3.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
4.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 사람됨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배움을 누릴 권리
5.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자연과의 공존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교육에 대한 권리
6. 적합한 환경과 적절한 조건에서 차별 없이 학습할 권리
7. 자신을 대표하는 모임을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
8.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학교운영 전반에 참여하고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9. 다양한 모임을 구성하고, 자유롭게 운영·활동할 권리
10. 존엄을 해치는 별이나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11.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12.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학교의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13. 말, 글, 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권리
14. 머리모양, 복장 등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15. 방송, 신문, 문집, 전단지, 벽보,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의견을 밝히고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
16. 학교안팎에서 집회나 시위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
17. 학교 밖 모임이나 단체, 정치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18.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
19. 학교당국에 의해 수집된 자기 정보에 대한 접근, 보관, 수정 등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20. 소지품과 사적 공간 등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21. 자신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22.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23.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안정, 성장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권리
24.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
25. 놀이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
26. 징계과정에서 인권의 기준에 부합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
27. 특별한 상황에 놓일 경우 각별한 지원과 보살핌을 받을 권리
28. 두려움 없이 빼앗긴 권리를 되찾거나 되찾는 일에 함께할 권리
29.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

노예학습을 거부할 권리

V.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 보장

1.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과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학생을 대할 때 학생의 존엄성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학생의 존엄과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은 학교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을 때 존엄한 인격체로 대접받는다고 볼 수 있다. 학교당국과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학생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학생의 의견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학교 규율

1-1. 모든 수준의 학교 규율은 학생의 존엄성에 합치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또한 학교 규율에 대한 학생의 동의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학교의 규율은 아래를 포함한다.

- 학생생활규정(용의복장규정, 선도(징계)규정, 학생회칙, 포상규정 등)

- 학교폭력 예방과 사건 해결을 위한 지침
 - 학급 규칙
 - 담임교사의 학급운영과 관련한 지시
 - 학교 안팎에서, 학기 중은 물론 방학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생활지도 방침
 - 학교 기숙사나 합숙소의 규칙
 - 학교 시설 이용이나 생활과 관련한 각종 지침 등
- 1-2. 모든 학생은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학교 규율의 제·개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여기에는 학교 규율의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학생의 참여와 동의에 바탕을 둘 때 학교규율의 자발적 준수를 기대할 수 있다.
- 1-3. 학교당국은 학생의 의견이 다른 교육주체들의 의견에 비해 소홀하게 혹은 낮은 비중으로 취급되고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한다. 학생의 의견과 다른 규율을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고자 할 때는 남들 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 1-4. 학교규율을 제·개정하는 과정은 교육적 안내의 과정이다. 학교규율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학생의 판단을 돋는 충분한 정보와 토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참여하여 만든 규율이 학생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 원칙에 부합하는지 학생 스스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안내할 책임이 있다.
- 1-5. 학생생활규정을 포함한 각종 성문화된 규칙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지되어야 하며, 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는 규칙을 공개하여야 한다.

■ 강요된 교육활동

- 1-6.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에는 학생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요청이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자율학습, 보충수업, 방과 후 교육, 학습부진아 지원 등 모든 추가적인 교육활동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과정에 학생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확보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은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따져보아야 한다.
- 학생 모두가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활동인 양 소개하는 경우
 - 지시나 명령으로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쓰게 하는 경우
 - 추가적인 교육활동 시간에 정규 수업 진도를 나감으로써 사실상 불참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경우
 - 정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등교시간을 일방적으로 앞당기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각종 허가 절차를 두어 학교를 가로막는 경우
- 1-7. 학교당국은 보호자의 동의뿐 아니라 학생의 동의를 얻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추가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요구될 때, 학생은 이를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학생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성장하고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학생 자신의 판단을 묻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 1-8. 교육내용과 관련성이 적은 공연 관람을 학생에게 요구하거나 이를 점수에 반영하는 것은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

■ 언어 사용

1-9.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며, 서로를 존엄한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을 대할 때 학생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있지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어의 사용, 특히 성, 장애, 인종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적 언어 사용은 학생에게 큰 상처를 준다. 아래와 같은 언어 사용은 학생의 존엄성을 위협할 수 있다.

- 욕이나 위협을 가하는 말
- 학생의 신체적 특성을 놀림거리로 삼는 말
- 학생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말
- 학생 보호자나 특정 가족형태를 모욕하는 말
-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을 회화화하거나 모욕하는 말

■ 학교 밖 교육활동시설의 선택

1-10. 학교당국은 수련회나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을 위해 숙박시설을 선정할 때, 가용 자원의 한도 내에서 시설 수준이 학생의 존엄성에 부합하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1인당 적정 공간이 확보되고 있는지, 음식은 위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시설운영방침이 학생에게 너무 강압적이지는 않은지 등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1-11. 학교당국은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훈련 조교, 관광가이드 등 학생 교육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학생을 모욕적 혹은 위협적으로 대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협의는 필수적이다.

■ 학생들과의 약속

1-12. 학생은 학교당국의 결정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설명이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내용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이나 위협을 느끼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1-13. 학교당국이 학생에게 한 약속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합당한 이유 없이 학생과 약속한 조치가 연기되고 있지 않은지, 학생이 일방적으로 약속이 파기되었다고 느끼지는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차별 금지

학생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성, 장애, 인종, 출신지역, 성 정체성, 가족형태, 외모, 경제적 수준, 사회적 신분, 가족형태, 성적, 학년, 나이 등이 다를지라도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전반에서 차별 없이 권리(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권리가 차별 없이 존중·보호·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을 신이 속한 집단의 잘못으로 인한 부당한 제재나 차별대우도 받지 않는다. 학교당국은 모든 학생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하고, 학교의 결정이 미치는 차별적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권리가 차별 없이 존중·보호·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당국은 규정, 행정 조치, 시설,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근절할 책임이 있다. 학교당국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 반(反)차별 정신의 보편화, 학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 통합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통해 차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차별 없는 학교

2-1. 학교당국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별, 장애, 인종, 성 정체성 등이 원인이 된 괴롭힘이나 비교 우대, 배제 등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 단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취해지는 우대 정책은 차별이 아니다. 분리 교육의 정당성은 합당한 이유에 기반하고 해당 학생의 동의를 얻어 합리적으로 실행될 때 인정될 수 있다.

2-2. 모든 학생은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학교당국은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시설 이용 전반에서 성적을 이유로 학생을 우대하거나 학생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예는 성적을 근거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 성적 우수자에게만 도서관 이용을 개방하는 등 성적 우수자를 우대하는 경우
- 기숙사 입사 조건으로 성적 제한 규정을 두거나 성적에 따라 기숙사 방을 배정하는 경우
- 외부 지원금을 소수의 성적 우수자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성적 우수자만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경우

2-3. 모든 학생은 성별을 차이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학교당국은 합당한 이유 없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을 구분하거나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분리 조치가 학생에게 고정된 성역할을 강요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차별적 조치의 예가 될 수 있다.

- 기숙사 통금 시간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
- 여학생은 두발 길이 자유, 남학생은 길이를 제한하는 등 성별에 따라 학교규율의 적용과 징계의 정도가 다른 경우
- 짐을 옮길 때는 남학생, 공간 꾸미기는 여학생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은연중에 성역할 분업을 강요하는 경우
- 진로 상담에서 성역할 분업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여성과 남성의 진로를 구분하여 유도하는 경우
- 합리적 기준 없이 임의적 혹은 관행적으로 한쪽 성만 참가 가능한 대회를 여는 경우

2-4. 모든 학생은 학년이나 나이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학생의 의사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하급학년의 경우에는 학생의 의사를 충분히 파악

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당국은 학년 사이의 위계와 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 순서를 상급학년부터 배치하는 일, 상급학년 교실 주변에 하급학년 학생의 출입을 금하거나 떠든다는 이유로 훈계, 체벌하는 일 등은 학년 사이의 위계를 굳히는 일이다.

2-5. 모든 학생은 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빈곤 가정의 학생이 편견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가능한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학교당국은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정 형편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급식 지원, 수학여행 등 비용 지원 등은 비공개로 이뤄져야 하며 수업료나 급식비 체납 사실이 공개되어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른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 역시 차별에 해당한다.

○ 학교당국은 빈곤가정의 학생 당사자를 비롯해 다른 학교 구성원이 복지 지원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인식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을 지원할 때 지원의 내용과 방법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듣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빈곤가정의 학생이나 보호자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일, 학내 복지 지원 심사에서 부당하게 탈락시키는 일 등은 없어야 한다.

○ 빈곤가정의 학생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배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역량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교육당국,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빈곤가정 학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

2-6. 모든 학생은 자신이 속한 가족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존재를 존중하고, 특정한 가족형태만을 '정상가족'으로 인정하고 다른 형태의 가족을 비하하는 등 교육과정에서 편견과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설생활에 대한 편견 유포, 특정 가족형태만을 고려한 과제물 제시, 결손가정·동성연애자 등 차별적인 언어 사용 등은 없어야 한다.

2-7. 학교당국은 가출 학생을 대할 때 가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출 자체를 징계 대상으로 삼고 가출 학생에 대해 도덕적 낙인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다.

■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 여성

2-8. (교육과정) 학교당국은 교육과정을 통해 여성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식적인 교육내용은 물론이고 진학 지도, 학생들 사이의 관계와 문화 등 교육과정 전반에서 성역할 분업, 여성 차별적 관행, 반여성적 언어 사용 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학생 교복으로 치마만 허용하는 규정, 여남 분리적 체육수업, 남성의 성 매수 경험에 대한 묵인, 성희롱 발언에 대한 관용적인 분위기 등은 그 예가 될 수 있다. 학교는 성 평등 인식을 확대하고 여성이 존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성인권 교육 등 학교 풍토 조성에 힘써야 한다.

2-9. (시설) 여학생은 여성의 몸과 특성을 고려한 편의 시설과 물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보건실은 여성용과 남성용을 구분해야 한다. 유휴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원치 않는 노출이나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공간 배치가 필요하다.

○ 여학생 휴게실이 필요하다. 여성 몸의 특성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리대 자판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해야 한다.

○ 화장실은 적정 변기수와 온수사용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여성화장실(대변기)의 구조는 남성화장실(대·소변기)과 차이가 있으므로 여성화장실의 전체 크기는 확장 조정되어야 한다.

2-10. (여성인권 교육) 학교당국은 모든 학생에 대해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여성인권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특히 여학생은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알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여성인권 교육을 공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여성인권 교육은 성 평등, 주체적 여성상과 자기결정권, 성폭력·원치 않는 임신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법 등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인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편향된 관점이 제시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교육, 비혼 임신의 경우 여성만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교육 등은 공평하지 않다.

2-11. (비혼 임신) 비혼의 상태로 임신한 여학생은 중단 없는 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임신한 여학생의 건강과 교육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지원 조치에는 낯설고 긴장된 상태에 놓인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돌볼 수 있는 상담 지원도 포함된다. 학교당국은 또한 성경험, 임신 등의 사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거나 휴학 강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2-12. (여성 대표성 강화) 여성은 모든 학교활동에 동등하게 참여, 활동할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여성의 교육과정, 학생자치활동 등에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13. (생리 공결) 여성은 건강을 지키고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여학생이 교육과정 중에 적절한 휴식이나 이해를 요구할 때 학교당국은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생리 공결 처리는 해당 학생의 의사 표현에 따라 기타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부가 절차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생리공결 처리 담당교사가 남성일 때 생리공결 활용률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다른 절차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2-14. (성폭력, 성 관련 행동) 여학생은 성 관련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 성폭력 사건 조사 등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상담과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와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불가피한 경우나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남성교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장애인

2-15. (교육 접근) 장애 학생은 차별 없이 학교교육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장애 학생의 입학·전학을 조건 없이 즉각 수용하고, 해당 학생의 장애유형에 적절한 교육내용과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시설이나 교사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장애 학생의 전·입학을 거부, 회피해서는 안 된다. 통학에 필요한 교통편의도 제공되어야 한다.

2-16. (편의시설) 장애 학생은 배움을 누리는 데 필요한 편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기본 편의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이 부적합할 경우 즉각 개

보수해야 한다. 시설 부족을 이유로 장애 학생이 비장애인과 다름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조건에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 학교당국은 다른 학교 구성원에게도 편의시설 확보가 장애 학생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치임을 이해시킬 책임이 있다.

2-17. (교육 지원) 장애 학생은 자신의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특수교사, 보조교사, 학습보조물, 치료사, 상담 등을 제공하여 장애 학생이 적절하고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 특히 눈에 잘 띠지 않는 저시력장애 등 경증장애를 겪는 학생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보호자의 학교 상주를 요구하는 등 학교의 교육 지원 책임을 장애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2-18. (배제 금지) 장애 학생은 모든 교육활동에 제한 없이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예체능 수업, 과학실험, 수학여행, 수련회, 방과 후 수업 등 학교 안팎의 모든 교육활동에 장애 학생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활동 참여의 대가로 경비 지출, 보조인력 보충,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 등은 요구될 수 없다.

2-19. (통합을 위한 교육) 장애 학생은 비장애인 학생과 함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장애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애 학생이 비장애인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또 장애 학생을 괴롭힘, 차별 등에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장애 학생의 인권과 통합교육에 공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20. (교사 지원) 통합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사가 장애 학생을 잘 이해하고 교육을 준비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 통합교육을 위한 연수는 전체 교사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 교사가 통합교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 이주민 학생

이주노동자 자녀, 북 출신 이주민 학생 등 인종적, 문화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학생은 차별 없이 배움을 누리고 자신을 긍정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21. (교육 접근) 이주민 학생도 차별 없이 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보호자나 학생 자신의 체류 자격이 무엇이든지, 출신국가가 무엇이든지 학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당국은 재량권을 명분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전·입학 요구를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 체류 자격을 이유로 정규 교육과정을 마쳤음에도 졸업장이 아닌 수료증만 발급하는 것은 중단 없는 교육을 가로막는 차별이다.

2-22. (교육 지원) 학교당국은 이주민 학생의 교육과 학교생활 적응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인 학교생활안내서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 이주민 학생의 학년 배치 시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고, 언어·이해능력 등 학습능력,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한국어 수준만을 기준으로 한 학년 배치가 오히려 이주민 학생과 여타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형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학교당국은 이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을 분리 배치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분리·구분으로 드러나고 차별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주민 학생의 적응과 지원을 위해 특별학급을 운영할 경우, 이러한 구분이 차별을 조장하지는 않는지, 통합교육의 목적과 결과를 상쇄할 만한 효과가 있는지 등 특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가족과의 헤어짐, 삶의 터전을 떠난 상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데 따른 스트레스 등 이주

민 학생은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 학교당국은 이주민 학생이 가진 아픔을 돌보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상담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2-23. (통합을 위한 교육) 학교당국은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이주민 학생이 폭력이나 위협, 따돌림, 차별적 언어 사용 등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주민 학생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다문화 교육, 문화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이주민 학생과 다른 학교구성원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동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24. (배제 금지) 이주민 학생은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이주민 학생의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학교급식 식단 배치, 종교행사, 학교축제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25. (역사와 문화 존중) 이주민 학생은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알릴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교육과정에서 이주민 학생의 출신국가를 포함해 다양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일부 대륙이나 국가, 민족을 미화하는 교육,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담은 교육,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교육 등은 보편적 지식이라 보기 어렵다. 학교당국은 또한 이주민 학생이 자기 문화에 자긍심을 갖고 다른 학교 구성원과 나눌 수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배치해야 한다.

2-26. (개인정보) 학교당국은 이주민 학생의 개인정보와 가족 상태가 함부로 수집, 공개, 유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 자신과 보호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는 파악되어야 하고, 특히 출신 국가, 보호자의 체류 자격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함부로 노출되어 학생이나 보호자가 차별을 받거나 곤경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주민 학생과 보호자의 정보는 보호자의 추방 등 위급상황에서도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성소수자 학생

2-27. (교육과정) 학생은 자신의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학교당국은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소수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징계, 관계에 대한 중단 요구, 심리적 압박, 특정 외모에 대한 규제나 낙인, 비하나 혐오 발언 등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폭력, 따돌림 등을 중단시키고 예방하기 위해 성소수자 이해 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과서나 교육내용 가 운데 등장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그대로 유포되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

2-28. (아웃팅의 금지) 학생은 자신의 성 정체성과 관련한 비밀유지 등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을 비롯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학생의 성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가족에게 알리는 때에도 당사자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2-29. (성 정체성의 탐색 지원) 학생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유롭고 진지하게 탐색할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성소수자의 정체성, 성과 삶 등에 대해 보다 폭넓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권단체 등과의 연계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3. 교육에 대한 권리

학생은 배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교육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욕구와 사회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고 감당할 만한 수준의 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학생의 사람됨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자연과의 공존 등 인류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필요한 가치를 익힐 수 있도록 돋는 데 있다.

■ 교육 목표의 실현

학교당국은 교육목표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교육목표는 학교가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목표뿐 아니라 학교의 문화, 교사의 교육 태도, 학급의 급훈 등 비공식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목표까지를 포함한다.

3-1. 학교당국은 교육과정이 특정 교과목에 편중되어 있지 않은지,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 외 활동이 정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학교의 전반적 분위기는 교육목표에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교과서 이외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고 교과 외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에 대한 불관용, 생태 친화적 학교환경 조성 등과 같이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는 일도 교육 목표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3-2. 경쟁적인 교육 풍토는 학생들의 인권과 동등한 동료관계 형성에 위협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학교당국은 학생들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경쟁이 부추겨지고 있지 않은지, 전시성 교육활동으로 수업 진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 유념해야 한다. 아래는 경쟁적인 교육 풍토를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0교시'나 '-1교시' 등 이른 아침 시간부터 정규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
- 엄격한 상벌규정이나 사소한 잘못에도 별점을 부과하는 경우
- 경시대회, 문예대회, 일제고사, 경기대회, 자격증 시험 등 잦은 대회 참가나 시험 준비를 시키는 경우
- 운동회, 학예회, 작품전시회 등 학교행사를 전시성으로 과도하게 준비하게끔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3-3. 학교당국은 학생 지도 방식이 일부 학생에게 특권의식을 심어주거나 학생들을 상호감시자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학생 지도 방식은 정당한 교육의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학생 선도부를 두어 규정을 어긴 학생을 적발하도록 요구하는 일
- 학생회 임원에게 선도활동을 요구하는 일
- 규칙을 어긴 동료의 이름을 적어내도록 지시하는 일
- 교실 정숙을 목적으로 교실 안에 몰래 카메라 또는 녹음장비를 설치하거나 정보원을 심어두는 일

3-4. 학교당국은 현장학습, 수련회, 극기훈련 등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교육활동도 ①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가혹한 극기훈련, 교육이 아닌 노동력 수급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장실습 등은 ①의 교육목표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 교육으로 보기 힘들다.

■ 교육과정과 정책에 대한 참여

3-5. 학생은 배움의 내용과 형식, 일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당국은 한 학기의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적어도 학기 초에는 한 학기의 교육과 학생에게 안내해야 한다. 학교 밖 교육활동의 개최 여부와 시기, 장소, 내용 등을 결정할 때에도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유념해야 한다.

3-6. 학교의 계열 변화, 통폐합, 부지 이전 등 학생의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를 결정할 때에도 학생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7. 학교당국은 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의 입학 정책, 직업교육정책 등 교육정책의 변화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학생이 이해하기 쉽고 충분하게 제공하는 일은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 교육 선택

학생에게는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

3-8. 학교당국은 학생이 다양한 학습 경험을 누리고 있는지를 살피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택과목을 개설하기 전에 학생의 선호도를 미리 파악하는 일, 선택과목의 목록을 확대하는 일, 학교 밖 교육기관이나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강사진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웃학교와 수업을 교류하거나 공동수업을 추진하는 일 등 학교의 권한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지원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3-9. 자율학습, 보충수업, 방과 후 활동 등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서도 학생은 다양한 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었는지, 교사 임의로 참여 과목을 정해주지는 않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3-10. 교사는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할 때,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이 특정 계열의 학교나 특정 대학 지원을 강요받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학습환경

학생의 학습권은 적절한 학습 환경의 정비 없이 충분히 실현될 수 없다. 학교당국은 모두를 위한 무상교육이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가용자원의 최대한도로 적절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11. 학교당국은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인원을 넘어서 자기 수준과 욕구에 부합하는 교육 지원으로부터 소외되는 학생은 없는지 살펴보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3-12. 학교 건물의 신축이나 개축 공사가 제 때 완료되지 않아 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이 보장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13. 학교당국은 각종 실험·실습 기자재를 포함한 학습 준비물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충분한 학습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학습 준비물이 부족해 학생이 추가적인 경제 부담

을 안거나 필요한 학습 기회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예산을 수립할 때 학습준비물을 포함한 학습 지원액에 대해 충분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하며, 학습 지원 예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습 지원을 위한 물품에는 컴퓨터, 인쇄기, 복사기 등이 포함된다.

3-14.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학교운영지원비를 원천 징수하는 일은 무상교육의 법적 취지에 위반된다.

■ 학습권의 박탈

학생에게서 학습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학생이 일시적, 영구적으로 학습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3-15. 학생의 학습권 박탈은 손쉬운 처벌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이나 학교규율에 의한 결정, 긴급성이 요구되는 조사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이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전학 결정을 내린 학교는 다른 학교 전학을 알선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3-16. 학생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조사는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시간 이외에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당국은 불필요하게 조사 시간이 길어져 학생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없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

3-17.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추가 교육은 학습 부진의 원인을 꼼꼼히 살펴 개별 학생의 동기 유발과 수준 향상이 가능한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형식적인 지도에 그치지 않도록, 담당 교사가 충분한 여유를 갖고 전문적인 교육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3-18. 학교당국은 중도 탈학률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적절한 상담과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동등한 교육 접근

학생은 차별 없이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19. 학교당국은 학생이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활동을 동등하게 향유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경제형편 때문에 수업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학생도 교육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련회나 수학여행 등 비용 부담이 큰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진행할 때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0. 학교당국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학생의 입학, 전학, 복학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학교당국이 취하는 태도는 학생의 학습권뿐 아니라 정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학생 선수에 대한 지원

학생 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배움의 과정에 놓여있는 학생이자 존엄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3-21. 학교당국은 학생 선수의 훈련과 합숙, 대회 참석 등 선수생활 전반에서 교직원이나 선배에 의한 부당한 폭력, 기합, 언어폭력이 일어나지 않는지 감독해야 한다. 학생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조치를 담은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2. 과도한 경기 참여와 훈련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위협할 수 있다. 학생 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학기 중 출전 횟수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훈련 시간과 경기는 수업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3-23. 학생 선수의 학습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동부 담당 교사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학생 선수가 운동과 교육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살피고 지원해야 한다.

3-24.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두거나 상급학교 진학 시 선수로 진학하지 못한 학생은 큰 좌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겪을 수 있다. 학교당국은 중간에 선수 생활을 그만두는 학생을 위해 학습 부진을 극복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교육적 보살핌을 제공해야 한다.

4. 학생 자치와 참여

학생은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은 교육 주체로서 학생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모임을 만들고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기도 하다. 학생은 또한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적극 보장받아야 한다.

■ 학생 자치와 참여 기반의 조성

학교당국은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교육적 지원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4-1. 학생 자치와 참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되는지, 학교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공식적인 학생 참여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지, 학생들이 모여 활동할 공간과 자치 활동을 홍보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자율적인 모임 운영이 가능한지 등 필요한 뒷받침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4-2. 학급 단위에서 학생 자치와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학교 수준의 학생 자치와 참여도 활성화되기 힘들다. 학급 임원의 민주적 직선, 학급회의의 정례적 개최, 자유로운 안건 발의와 민주적 토론, 의결권 보장 등이 이루어져 있는지 살피고 지원해야 한다.

4-3. 학생이 학교당국에게 면담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의 방문 요청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4-4. 학교당국은 학생들이 자치와 참여의 의미를 알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시간 배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찾아보아야 한다.

4-5. 학부모회 등 학생 보호자의 참여는 학생 자치와 참여를 보완하는 활동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 보호자가 기자재 구입, 행사 동원, 행사물품 준비 등을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요구받거나 참여에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일은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 행사나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보호자의 참여를 요청할 때에는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학생 대표 기구로서의 학생회(전교여린이회)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회를 학생 대표 기구로서 학생회의 활동과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

4-6. 학교당국은 학생대표의 입후보 자격에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부당한 제한을 둘 수 없다. 부당한 제한으로는 교사의 추천, 성적, 징계 경력, 품행, 종교, 가정의 경제형편 등이 포함된다. 어떤 후보자가 대표로 적합한지는 유권자인 학생이 판단할 몫이다. 또한 학교당국은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에 대해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4-7. 학생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거 참여를 제한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선거일을 정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거로 선출된 학생대표에 대해 학교당국의 사후 승인 절차를 두는 것은 학생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4-8. 학생회의 민주적,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의 권한을 포함하여 충분한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리
-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학생회칙,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
-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
-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 타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4-9. 학교당국은 학생회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사전·사후 승인 절차로 인해 학생회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도교사나 지도위원회의 역할은 자문을 제공하는 데 있다.

4-10.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등 학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안건이 다루어질 때, 학교당국은 미리 안건을 공개하고 학생대표의 참석을 요청하여 학생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생대표의 참여는 의결과정에 대한 참여를 포함한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

4-11.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일반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대의원대회 회의록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 동아리 활동

동아리는 학생이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제공한다. 타인의 권리를 해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면, 모든 동아리의 결성과 참여, 자율적 활동은 학생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4-12. 학내 동아리의 설립과 가입에 대한 허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은 자유 의사에 따라 원하는 동아리를 설립하고 원하는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다. 학교당국은 엄격하고 불필요한 동아리 설립 절차와 요건으로 학생의 자유로운 동아리 설립이 가로막히고 있지 않은지, 특정 동아리 가입 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나 불이익에 대한 암시가 있지는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13. 설립된 동아리는 학교 운영이나 다른 학교 구성원에게 명백한 위험을 주지 않는 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당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아리의 행사 개최나 참여를 가로막는 일은 없는지, 외부 동아리와의 연합 활동이나 공연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14. 학교당국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동아리 활동 시간이 다른 시간으로 전용되지 않는지, 동아리 모임이나 연습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필요한 기자재와 활동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공연 장소는 제공되고 있는지, 활동에 필요한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살피고 지원해야 한다.

5. 신체의 자유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다. 몸의 존엄성과 안전, 자유를 위협받는 경험은 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학교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파괴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해치는 가혹하거나 모욕적인 처우, 자유의사에 반한 행위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체벌을 비롯한 모욕적인 처우

학생은 교육의 전 과정에서 심한 상처나 창피를 주는 벌이나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5-1.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에 대한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 체벌이란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타격을 주는 행위뿐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5-2. 강제이발은 금지된다. 교사가 직접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일, 다른 누군가에게 머리 자르기를

지시하는 일, 머리를 자르게 할 목적으로 학생의 의사에 반해 미용실로 데려가는 일 등은 모두 강제이발에 해당한다.

5-3. 학교당국은 학생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기타 모든 형태의 벌을 금지해야 한다. 정당한 교육의 범위를 벗어난 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소수의 잘못을 이유로 단체기합 등 집단적으로 벌을 주는 일
-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았거나 시험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벌을 주는 일
- 공개적인 장소에서 학생을 벌세우는 일
- 이미 벌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덧붙이는 일
- 무릎을 꿇게 하거나 바닥에 엎드려 반성문을 쓰게 하는 일
- 분필이나 청소도구 등을 물고 서 있게 하는 일
- 바지를 벗게 하거나 성기를 만지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대는 등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일
- 급식지도 등을 이유로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일
- 수업시간 중 화장실을 못 가게 하거나 가는 학생을 벌주는 일
- 학생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강요하는 일

5-4. 학교당국은 질서 유지, 정숙, 안전 등을 목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때에도 학생의 신체에 대한 부당하거나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학생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학생의 몸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5-5. 학생은 교육활동의 전 과정에서 성적 대상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와 모든 형태의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학생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빤히 쳐다보거나 만지거나 껴안는 등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학생의 존엄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학교당국은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민감하고 책임감 있게 반응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5-6. 교사가 학생에 대한 사랑, 감동, 기대, 친밀감, 안타까움, 공감 등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몸에 접촉하는 경우에도 학생이 그 표현을 수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좋은 동기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학생에게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5-7. 학교당국과 교사는 흡연단속을 이유로 니코틴 진단을 실시하거나 금연침을 시술하는 등 학생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의 몸을 강제로 검진하거나 의료 시술을 할 수 없다.

■ 강제 노동과 행사동원

학생은 교육적 목적과 상관없는 노동이나 행사에 의사에 반하여 참석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에게 참여를 요청할 때 학생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학생의 의사에 반한 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5-8. 학교당국은 교직원의 사적 용무를 위한 심부름 등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학생에게 일을 시키고 있지 않은지,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나 공간, 물품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학생에게 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피고 이를 금지해야 한다.

5-9. 학교급식 배분, 교내 행사 준비와 진행 등에서 학생의 힘을 빌리는 경우에도 먼저 학생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학생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령과 체력, 건강상태 등에 비해 과중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내 행사에 동아리의 참여를 요청할 때에도 동아리 구성원 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5-10. 학교당국은 경기 응원, 학교시설 기공식, 외부행사 등 교육적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전체 학생이 참석할 이유도 없는 각종 행사에 학생을 의무 참석케 하거나 참석 인원을 할당하여 교사로 하여금 학생을 동원하게끔 지시해서는 안 된다.

5-11. 학교당국은 학생의 봉사활동 과정에서 해당기관이 학생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을 맡기거나 특정 성향의 행사에 동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살피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 기숙생활에 대한 강요

학생은 원하지 않는 기숙생활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기숙사와 합숙소 생활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생활 규율에 학생의 의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12. 학생의 자발적이고 명시적 동의 없이, 학생에게 기숙사 입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평일 외출 금지, 아침 운동 강요, 과도한 통금 조치 등으로 학생이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13. 출전 준비 등 학생 선수의 합숙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합리적 기간을 넘어서는 장기 합숙이나 부당한 규율의 강요는 있어서는 안 된다.

6. 사상, 양심, 종교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당하거나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할 책임이 있다.

■ 양심에 반하는 서약

학생은 자기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갖는다. 생각과 양심의 자유는 내심을 드러내지 않을 침묵의 자유를 포함한다.

6-1. 학교당국은 학교 규율 준수를 약속하는 선서 혹은 문서의 작성 등을 학생에게 요청할 때, 미

리 충분한 설명과 동의 확인 절차가 갖추어졌는지 살펴야 한다.

6-2. 학교당국은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사상이나 가치를 주입할 위험이 있는 상정의식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은 양심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포함하여 상정의식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6-3. 학교당국은 학생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 뉘우침을 고백하게 되는 비교육적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생의 양심에 반하여 단지 별을 피하거나 경감시키는 대가로서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뉘우침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본래의 교육 목적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다.

6-4. 실습이나 훈련기간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 등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미리 각서를 쓰도록 하는 일은 학교당국의 정당한 책임을 외면하는 일에 해당한다.

■ 일방적 생각을 주입하는 교육활동

학생은 학교교육의 전 과정을 통하여 자기 나름의 생각을 형성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6-5. 학생은 일방적으로 특정한 생각을 가질 것을 강요받거나 갖고 있는 생각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모든 교육활동의 과정에서 학생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접하고 자기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특정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내외 각종 대회에 학생이 참여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6-6. 애국조회, 반성조회, '사랑의 매' 전달식 등 학교당국의 일방적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전체 학생을 한 곳에 집결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

■ 종교 강요

학생은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유지하거나 다른 종교로 바꾸거나 종교를 믿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학교당국이나 교사가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그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종교계열의 사립학교에는 더 각별한 책임이 요구된다.

6-7.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은연중에 차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자신이 믿는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이 강요당하고 있지 않은지, 식단을 짤 때 학생 종교의 다양성이 고려되고 있는지 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6-8.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나 의식에 참여할지, 학생회 조직체계에 종교부를 둘지, 종교과목을 수강할지 여부 등은 학생의 자발적 선택에 맡겨야 한다. 종교 활동을 의무화하거나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종교과목이 개설된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과목이 함께 개설되어야 한다.

6-9. 학교당국은 교사의 직위를 남용하여 선교를 목적으로 학생에게 특정 종교의 경전이나 서적 읽기를 요구하지 않는지, 학생이 믿는 종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는지, 특정 종교를 일방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하여 편견을 전달하지 않는지 등을 살필 책임이 있다.

■ 도서 등에 대한 검열

6-10. 학생은 도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출판물에 접근하고 생각을 키워나갈 권리가 있다. 특정 성향의 신문, 특정 사상이나 주제를 다룬 도서, 특정 저자가 쓴 도서 등을 소지하거나 읽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등은 부당 검열에 해당한다. 특정 사상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문이나 도서의 도서관 반입을 금지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7. 학생의 표현

학생은 말이나 글, 예술, 매체, 몸 등 자기가 선택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생활양식을 외부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명시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학생의 표현에 대한 사전 검열이나 통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흘로 또는 여럿이 의사를 표현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두발·복장 등 용모 규정

학생은 자기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몸을 통해 표현할 자유를 갖는다. 학교당국은 특정한 두발이나 복장 양식 등이 교육과 다른 사람의 인권에 명백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용모 제한 규정을 둘 수 없다.

7-1. 학생은 생활양식, 화상이나 장애 등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복장이나 용모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학생으로 하여금 교복과 사복 가운데 무엇을 입을지, 교복 하의를 치마와 바지 중 무엇으로 할지, 하복과 동복 중에 무엇을 입을지, 교복 안이나 바깥에 무엇을 입을지, 어떤 모양과 색깔의 양말을 신을지, 실내에서 외투를 벗을지 입을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보장해야 한다. 속옷이나 구두, 가방, 장신구, 모자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은 두지 않는다.

7-2. 두발의 자유 역시 학생의 기본권이다. 두발의 길이나 색깔, 모양, 미용 물품 등도 학생 스스로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7-3. 이름표나 학교 배지의 착용은 권장될 수는 있지만, 착용하지 않는 대가로 불이익을 주어져서는 안 된다.

7-4. 학교당국은 학생의 명시적 요청이 없더라도 현행 용모 관리 규정이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않은지 따져보고 학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책임이 있다.

■ 언론·매체 활동

학생은 방송, 신문, 잡지, 문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견을 밝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모을 권리

리를 갖는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언론·매체 활동에 대한 보장과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7-5. 학교당국은 학생이 매체를 기획, 취재, 편집, 발행, 배포하는 전 과정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용자원의 최대한도로 매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매체의 내용이 명예훼손 등 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학생에게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뒤, 내용의 수정이나 삭제, 배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매체의 폐기, 매체의 영구적인 폐쇄나 폐간, 관련 동아리에 대한 활동 중지나 해체 등의 조치는 합리적 제한의 범위를 넘어선다.

7-6. 매체를 기획하고 만드는 경험은 학생에게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체험할 교육적 기회가 된다. 특히 학교 신문이나 방송, 잡지는 학생의 알 권리와 보장을 보장하고 참여를 북돋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

■ 다양한 표현물과 의견 조직 활동

학생은 언론매체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표현물을 통해 자기 의견을 알리고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어떠한 주제에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단, 그 표현 내용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폭력을 선동하거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유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수정 요구나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7. 학생의 표현물이 다루는 주제 자체를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정당한 교육의 범위를 벗어난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어떤 주제에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학생이 그 주제에 다양하고 풍부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7-8. 학생은 전단지나 벽보를 통해 자기 의견이나 행사, 모임 구성원 모집, 학교운영과 관련된 사실 등을 알리거나 다양한 표현물에 접근할 수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표현물을 배포할 수 있는지, 배포된 전단지가 부당하게 압수되는 일은 없는지, 벽보를 게시할 공간은 충분한지, 게시공간이 학교당국의 알림사항이나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7-9. 학생은 설문조사나 서명운동, 공동선언자 모집 등 의견을 모으기 위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학교당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활동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지, 학생이 소지·배포·게시한 표현물을 빼앗거나 폐기하는 일은 없는지, 참여 학생의 명단을 따로 파악해 활동이 위축되는 일은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10. 학생은 정치적 의견을 포함하여 자신이 가진 의견을 드러내기 위해 배지, 팻말, 알림판, 스티커 등의 표현물을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고 동의하는 사람을 모으기 위한 행동을 펼칠 수 있다.

7-11. 학교당국은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학교당국이 마련한 홈페이지 운영 원칙이 학생의 의사 표현을 부당하게 또는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리자에 의해 운영 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삭제나 수정·삭제 요구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살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게시판이나 건의 게시판에 실명으로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운영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7-12. 축제를 비롯한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동아리는 참가 작품 등 참여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동아리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공연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교내외 집회와 시위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평화로운 집회나 시위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가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참여자들이 모인 이유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준비한 물품을 소지할 자유를 포함한다. 학교당국은 학내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사전 허가 절차를 두거나 신고 절차가 사실상 허가제와 다름없이 운영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7-13. 학생은 학교 건물이나 운동장 등 원하는 곳에 모여 집회나 시위를 열거나 참여할 수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들이 모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해야 한다. 개최나 참여를 가로막거나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7-14. 학생은 학교 밖에서 집회나 시위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가 있다. 집회·시위는 학생이 사회에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특정 주장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밖 집회·시위 참여를 규제할 수 없다.

7-15. 다음과 같은 학교당국의 조치는 학생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자유롭게 향유하는 것을 위협 할 수 있다. 다만,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사용이나 행동의 자체를 요청하는 일은 가능하다.

○ 집회·시위의 개최 자체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개최 일시와 장소, 주최자, 참여자 명단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일

○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집회·시위에 필요한 물품의 소지 여부를 검사하거나 압수하는 일

○ 집회·시위의 개최나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심리적 압력을 가하는 일

○ 개최를 앞둔 집회·시위를 비방하거나 집회·시위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편견을 유포함으로

써 참여를 제한하는 일

○ 집회·시위 현장에서 감시를 목적으로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기록하거나 촬영하는 일

■ 교외활동

학생은 학교 밖에서 모임을 만들거나 가입해 활동할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정치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7-16. 학생은 학교 밖에서 열리는 행사나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인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모임이나 활동을 금지하거나 탈퇴 압력을 가하거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7-17. 학생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학교 규정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8. 사생활과 개인정보

학생은 일기나 통신, 소지품, 사적 공간, 친구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생활의 의미도 다변화되고 있음에 유념하여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해석, 보장해야 한다.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학생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거나 유출되는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적 기록물

타인이나 제3자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쓰이지 않은 학생의 사적 기록물은 보호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학생의 사적 기록물을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적 기록물에는 일기, 편지, 쪽지,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포함된다.

8-1. 학생은 교육과정을 통해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생활지도나 글쓰기 지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일기장 검사나 그를 통한 포상 행위는 학생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 뿐 아니라 학생이 사생활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기르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진솔한 대화나 글쓰기 지도는 굳이 일기장 검사라는 형식을 빌지 않아도 가능하다. 교사와 학교당국은 상담편지 나누기, 생활문 쓰기 등 교육 목표의 성취와 사생활의 권리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8-2. 수업시간에 쓰이거나 오고간 편지, 쪽지 등을 발견한 교사는 해당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확인하거나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일은 학생에게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다.

8-3. 학생이 소지한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앤범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열어보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 역시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

■ 개인 소지품과 공간

학생은 개인 소지품을 소지하고 자기만의 공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개인 소지품과 사적 공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인 소지품이나 사적 공간에 대한 검사나 압수에는 합당한 이유와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

8-4. 학교당국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물품을 특정하여 소지를 금하는 규정을 들 수 없다. 학교당국은 휴대폰, 카메라, MP3, 게임기 등에 대한 소지를 아예 금지시키기보다는 합당한 이용 규정을 두는 쪽을 택해야 한다.

8-5. 학생의 가방, 책상서랍, 사물함 등은 사적 공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 안에서도 학생 생활실, 개인 수납장 등 사적 공간은 함부로 간섭받아서는 안 된다.

8-6. 학교당국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생의 소지품이나 개인 공간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는 증거물 또는 위험 물품을 찾게 되리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학생에 한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검사, 정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예고 없이 불시에 이루어지는 검사, 학생들 몰래 실시된 검사, 합리적 공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검사는 그 행위의 정당성은 물론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신뢰까지 위협한다. 검사를 진행하는 교사는 해당 학생의 나이나 성별, 규정 위반의 정도 등

을 고려하여 과도한 수치심과 위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소지품 검사는 피해야 한다.

8-7. 학교당국은 학생이 소지한 물품을 압수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확보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물품을 압수하는 일은 최후 수단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8-8. 학생은 사물함, 탈의실 등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특히, 학생이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타인에게 몸이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칸막이나 커튼 등을 설치해야 한다.

■ 개인정보

학생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교당국은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부당한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9. 학교당국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교육상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학생의 종교나 병력, 친구관계, 재산 수준, 가족형태, 지문 등 생체정보, 보호자의 직업이나 주민번호 등 교육적 필요성이 입증되기 힘든 민감한 정보는 학교당국에 의해 일괄적으로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가 개별 학생에 대한 상담·교육을 위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도 학생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8-10. 학교당국은 아래 예시처럼,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학생의 연락처나 주소 등을 학급 전체에 일괄적으로 나눠주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일
-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졸업앨범에 일괄 수록하는 일
- 학생의 가족형태, 경제상황 등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조사하거나 당사자를 호명함으로써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일
- 탈부착이 불가능하도록 교복에 이름표를 박음질하도록 강제하는 일
- 개인정보 입력을 담당 교사 이외의 사람에게 맡기는 일
- 신체검사 시 파악되는 건강정보나 보건실에서 파악된 병력 등을 함부로 공개하는 일
- 영장의 소지 여부, 당사자의 동의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사법당국이나 언론 등 외부기관에 학생 정보를 넘기는 일
- 학생 대상의 실태조사, 교육통계조사, DNA 검사 등 외부 연구·조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전에, 조사의 목적과 수집되는 정보의 성격, 불참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당사자 동의를 확인하지 않는 일

■ 교육과정에서 기록되는 정보

교육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집되는 정보 역시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상담을 통해 획득된 정보는 비공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8-11. 학생의 시험 성적이나 수행평가 결과 등을 게시하거나 성적순으로 앉히는 등 성적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한다. 또한 학생에게 수치심이나 우월감, 과도한 경쟁의식 등을 갖게 만들 수 있다.

8-12. 학교당국은 학생의 별점이나 징계 기록이 담긴 대장에 대해 책임자 이외의 사람이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8-13. 학교당국과 교사는 학생 지도를 위해 출결사항, 친구관계, 학내 활동 등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그 정보의 공개가 학생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 감시장비의 설치

학생은 부당한 감시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 안전, 폭력 예방 등 학생 안전을 이유로 설치된 장비가 감시의 기능도 동시에 갖고 있음을 유념하여 장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장비의 도입으로 학생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간섭받는 결과에 이르지 않았는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학생의 안전과 사생활이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8-14. 감시카메라(CCTV), 학생의 등하교 여부를 알려주는 장치 등 학생의 사생활을 제한하는 효과를 지닌 장비를 도입할 때에는 정당한 설치 이유를 밝히고 학생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학교당국은 감시카메라의 설치 장소, 촬영 목적, 촬영 시간, 촬영 범위, 녹화테이프의 보관 기간과 폐기 방법, 관리 책임자와 녹화테이프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 등을 모든 학생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하고,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설치 이유가 더 이상 정당화되기 힘들고 학생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 폐기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8-15. 어떠한 경우에도 몰래 촬영이나 녹음은 허용될 수 없다. 정당한 이유와 학생의 동의에 따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녹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녹음 기능이 없는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 소통과 관계

학생은 자기 의사에 따라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 누구를 사랑할지, 누구와 갈등을 빚고 그 문제를 언제 어떻게 해결할지는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사적 관계와 관계를 둘러싼 감정이 무시당하는 일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16. 학생은 연애, 교우관계 등 관계를 맺을 권리와 그 관계를 둘러싼 감정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호감, 사랑, 우정, 질투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은 성숙의 동반자이다. 학생의 사적 관계나 감정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우스갯거리로 만들거나 문제행동으로 치부하는 등의 부당한 간섭은 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고 성숙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다. 관계의 종류가 무엇이든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스스로 관계를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안내, 지원하는 일은 부당한 간섭에서 제외된다.

8-17. 학생들 사이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다.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성급히 해결하려는

교사의 욕심은 학생의 감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른 두 학생에게 격안기를 시키는 등 학생의 감정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 화해를 시키기보다는 당사자의 현재 감정을 존중하고 다툼의 원인을 살펴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

9. 정보 접근

학생은 학교당국에 의해 수집된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 수정 등 통제권을 가진다. 학생은 또한 도서,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성장 등을 위해 학생이 다양한 국내외적 정보원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적절하게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 자기 정보에 대한 접근

9-1. 학생은 학교당국에 의해 자기 정보가 수집, 기록된 후에도 자기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권을 갖는다. 학교당국은 학생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공지하고, 학생이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을 원할 때는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9-2. 학교당국으로부터 과도하게 수집되었거나 잘못 기록된 개인 정보에 대해 학생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당국은 그 요구를 권리로서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 학생의 자기 정보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당국은 당사자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며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생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 성장을 위한 정보

학생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보가 다양하고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살피고, 필요한 제반 서비스와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

9-3. 학교도서관은 교사뿐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돋는 자료창고이다. 특히 거리나 시간, 비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든 여건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도서관은 더욱 의미 있는 공간이 된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편안하고 유용한 공간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 까다롭고 엄격한 도서관 이용 규정은 학생이 도서관 이용을 꺼리게 되는 한 원인일 수 있다. 학교당국은 도서관 이용 규정이나 담당교사의 태도가 실내 정숙과 자료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을 넘어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규정을 집행하는 과정이 학생에게 모멸감을 주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 특히 사서교사 등 도서관 관리를 맡은 교직원은 기합을 주거나 도서관 출입 금지를 지시하는 등 이용 학생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정보 접근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학교당국은 학생의 수와 욕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도서가 비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학교당국은 도서의 수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내용적 다양성이 미흡하지 않은지, 대여기간이 너무 짧거나 대여 가능 권수가 적지 않은지 등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과 협의하여 적절한 도서대여 기간과 권수를 조정하고 학생이 신청한 도서를 적극 비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학교당국은 학생이 원하는 자료를 찾고 이용하는 데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서교사를 적극 배치해야 한다.

9-4. 일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원이 바로 컴퓨터이다. 그러므로 기숙사 등의 학생 생활공간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컴퓨터 이용을 수업시간으로만 제한하거나 점심시간 등 특정 시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학교당국이 학생의 정보 접근권에 대한 온전한 실현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특히 집에서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조건에 놓인 학생들의 정보 접근권 실현을 위해서는, 컴퓨터를 포함한 교내의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학생의 접근을 보다 적극적으로 열어두어야 한다.

9-5. 교육적 차원에서 인터넷 이용 제한 영역을 설정할 때 그 접근권이 자의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기록을 조회하는 등 학생의 정보원 활용에 대해 학교당국 및 교직원이 감시해서는 안 된다.

■ 매체 교육

9-6. 학교당국은 학생이 다양한 정보원을 적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홍보와 교육이 충분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학교당국은 학생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매체 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할 책임이 있다.

■ 참여를 위한 정보

학생은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운영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은 한 학생자치와 참여는 실현되기 힘들다.

9-7. 학교당국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는 한, 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학생이 요구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학교당국은 납득할 만한 사유를 성실히 밝혀야 한다.

9-8. 학생의 요구가 없더라도 학교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학교당국의 태도는 학교에 대한 학생의 신뢰를 높이는 토대가 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알 권리와 참여권 실현을 위해 학생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

10. 건강

학생은 교육과정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각별히 점검하고 건강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학교 안에서나 학교를 오가는 과정에서나 건강을 해치는 조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는 일, 학생 건강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운영 방침을 정비하고 제반 시설 확충에 힘쓰는 일 등이 포함된다.

■ 학교 환경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은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학생은 일상의 많은 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며 성장기에 있는 만큼 건강에 이로운 환경에서 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정기적인 위생과 시설 점검을 통해 학생이 보다 인간다운 조건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10-1. 학교는 학생이 편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배울 수 있도록 기본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교실이나 기숙사 내 냉난방 온도가 적정한지, 학습공간의 조도가 학생의 시력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책걸상은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지, 가방 무게를 덜 수 있는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 학생이 생활하고 배우는 공간이 쾌적하고 건강에 이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살피고 필요한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10-2. 학교당국은 위생을 위해 필요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실내 환풍기는 설치되어 있는지, 화장실과 세면대에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화장실에 비누와 화장지 등은 비치되어 있는지, 기본 위생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몸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커튼 등 큰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기가 구비되어 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는 몸을 움직이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학교당국은 교육과정과 학생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생 설비를 갖추는 일이 절실하다.

10-3. 학교당국은 학교 주변의 공사 등으로 인해 분진이나 소음, 햇볕가림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살피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 주변 환경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 정신 건강과 치유

학생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 입시 부담, 교사의 태도, 학교문화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학생의 정신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정체성, 문화, 개성 등이 저마다 다른 학생들이 한곳에 모여 매우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학생의 정신 건강과 치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학교당국의 책임은 더욱 절실하다.

10-4. 학교당국은 스트레스, 우울증, 정서불안, 사회성 장애 등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고려하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의 정신 관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치유 활동이 필수적이며, 학교당국은 학교 안팎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상담·치유 체계 마련에 힘써야 한다.

10-5. 학교당국은 학생이 교우관계나 가정, 학업 등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 거리낌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나아가 학교당국은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도 학생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학생 스스로 문제에 직면하여 문제를 해쳐 나갈 수 있도록 예방 교육에 힘써야 한다.

10-6. 학생의 문제 행동에는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학교당국은 심리적 압

박에서 오는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딱지를 붙이고 처벌하는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의 가정환경, 교우관계, 문화적 배경 등을 살펴 상담·치유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몸이 아픈 학생

질병이나 사고는 인간 삶의 한 부분이다. 학교당국은 질병이나 사고, 피로 등으로 몸이 아픈 학생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학생의 호소를 부당하게 거짓으로 몰아감으로써 학생의 몸과 마음에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10-7. 몸이 아프다는 학생의 호소는 진지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학생이 조퇴를 하거나 의료기관에 가는 일이 제지되어서는 안 된다.

10-8. 몸이 아픈 학생은 학교 보건실을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보건실의 이용 규정과 그 집행은 학생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에 두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당국은 보건실의 이용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하여 개선책을 서둘러야 한다.

○ 침상의 수, 침상과 침상 사이의 거리 등 보건실 공간 면적이 이용 학생의 수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가

○ 보건실이 너무 높은 층이나 햇볕이 잘 들지 않는 후미진 곳에 위치하여 학생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에 부족함은 없는가

○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업무와 병행하느라 자주 자리를 비우거나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몸이 아픈 학생이 휴식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가

○ 보건실에 입실할 때 보건교사가 아닌 담임교사의 허가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입실 절차로 인하여 보건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당하는 일은 없는가

○ 보건실 예산이 충분히 책정되지 않아 구비된 의약품이 부족하거나 치료에 필요한 기자재가 부족하진 않는가

○ 기숙사와 같은 학생생활공간 안에도 따로 보건실이 있거나 응급약 등이 구비되어 있는가

○ 방학 중 보충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 시간 등 학생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에 보건실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가

■ 먹을 권리

먹을 권리는 포기될 수 없는 사람의 권리이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은 충분한 영양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섭취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질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10-9. 학교 급식은 대다수 학생이 하루에 한번은 꼭 먹는 음식이다.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 급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도 뒷받침될 수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먹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교당국은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질환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학생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가 사용되는지, 주방 환경은 위생적인지, 식단은 골고루 짜여 있는지 등

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산이 아니거나 유통기한이 길거나 몸에 해로운 물질이 첨가된 질 낮은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방지하는 일은 학교당국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학교당국은 급식의 질을 꼼꼼히 살피고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외부 업체에 급식을 위탁한 경우, 급식 관련 사고가 발생해도 전문성이나 장비 부족 등으로 업체의 책임을 가리기 힘들다. 이 경우 학생에게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학교당국은 외부 업체에 급식을 위탁한 경우라도 학교가 개입·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거나 지방자치체의 도움을 받아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세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학교당국은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 등에게 급식업체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운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 급식업체가 식재료의 원산지와 질, 식단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 식단이나 급식 운영 지침 등을 짤 때에는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학교당국은 학생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이 짜이고 영양 관련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영양 담당 교사를 두는 등 적극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0-10. 학교당국은 모든 학생이 학교급식을 비롯하여 먹을거리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끼니를 굶거나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도 학교의 적극적 노력 하에 수치심이나 두려움 없이 먹을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급식비 미납 학생이나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되는 일은 없는지, 급식비 납부에 대한 공개 독촉을 받거나 부정적 시선에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끼는 일은 없는지, 학교 안팎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에 관한 정보가 적극 제공되고 있는지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급식 지원을 받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학교의 태도는 모든 학생이 먹을 권리를 올바로 인식하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기칠 수 있다.

10-11. 학교당국은 학교 매점에 대해서도 감독할 책임을 갖고 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합당한 매점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자의 선정에서부터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건강 검진

학생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외부 의료기관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건강 검진을 통해 학생의 건강권이 충분히 실현되고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있다.

10-12. 학생에 대한 건강 검진이 연령이나 생활양식 등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의 적극적 정책 수립 없이는 불가능하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외부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검진을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10-13. 학교 공간을 벗어 이루어지는 건강 검진(신체검사)의 경우에도 학교당국은 학생이 적절한 장비를 통해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상태에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진 장비는 위생적이고 적절한지, 학생의 몸이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검진이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검진 과정에서 성별·장애·인종 등 학생이 가진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는지, 학생의 건강 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는 않은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건강 촉진

학교당국은 학생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촉진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10-14. 학생은 체육시간을 통해서나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운동을 접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불가피한 이유 없이 체육시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천 시에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운동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학생 체형에 맞는 운동기구 등 학생의 건강 촉진을 위한 서비스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학생이나 장애학생 등도 체육활동에 차별 없이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15. 체력검사(체력장)는 학생 각자가 자기 체력을 인지하고 건강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운동을 보강해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돋는 장이다. 학교당국은 이러한 체력검사의 취지에서 벗어나 체력검사 결과를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체육수업이 운영되거나, 무리한 체력 등급화로 학생이 부당한 수치심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16. 학교당국은 학생이 학교 밖 생활에서 당면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문제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건교육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학생이 자기 몸을 아끼고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 타인의 몸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문화와 인식의 변화를 적극 고려하여, 피임 방법, 임신이나 성폭력 피해 시 대처 방법 등 성과 임신에 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강제 조치와 격리

10-17. 학생의 건강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운동을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체력 단련, 비만 치료 등을 목적으로 수업 시작 전이나 수업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로 참여하고 있는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비만 특별 관리반 등을 두는 것은 본인의 동의를 받는다곤 하더라도 특정 학생에 대한 낙인과 차별적인 효과를 놓을 수 있는 만큼, 학교당국은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보다 실질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해야 한다.

10-18. 학교당국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전염병 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응급조치와 전염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합리적 사유 없이 학생의 전염병 감염을 의심하여 합부로 격리시키거나 의사의 진단 없이 등교 정지나 복교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11. 안전

학생은 신체의 안전과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학교당국은 안전을 이유로 학생의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등 학생의 다른 권리의 실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학생 관리 소홀 등으로 문책을 받거나 불명예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 문제가 뒤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학내 안전사고

11-1. 학교 내 안전사고는 학생 개인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는 인식은 수업시간 외 운동장 사용을 금지하는 등 학생의 행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을 명분으로 학생 개인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다양한 학교시설을 활용하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당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시설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 복도나 계단에 위험한 물건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창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는가
- 높은 놀이시설 아래에는 모래 등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가
- 축구골대나 농구대 등 둔중한 운동기구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교실 유리창은 안전유리로 되어 있는가

■ 학교 밖 교육활동 시설

11-2. 학교당국은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할 경우에도 학생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학교 밖 교육활동 장소나 숙식시설이 학생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한지 등을 미리 점검하고 안전 조치 마련을 적극 요구하여야 한다.

■ 등하굣길

11-3. 학생이 학교를 오가는 길도 학교 안만큼 학생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안전권 실현을 위해 등하굣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 학생 통학로에 인도나 횡단보도가 확보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통학로에 위험한 공사가 진행 중일 경우, 학교당국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지 적극 알아보아야 한다. 시공업체나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요청하여 통학버스 등 다른 통학수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11-4. 학교당국은 안전을 이유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특정 통학수단 이용을 일괄 금지하는 조처가 타당하고 불가피한 조처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학생의 통학 수단을 제한하기보다 통학 수단 이용을 가로막는 조건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면허가 없는 학생의 오토바이 통학 금지는 합당한 제한에 해당한다.

■ 안전교육

11-5. 학생이 안전에 대한 자기 권리를 인식하고 누리기 위해 안전교육은 필수적이다. 학교당국은 권리에 기반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교육에 힘써야 한다. 사고가 일어난 뒤에 부랴부랴 일회적,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안전교육으로는 원하는 결실을 맺기 힘들다. 학교당국은 화재 등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응급 처치와 대피 방법 등 긴급 대응 교육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쉼, 놀이, 문화

학생은 쉬고 놀고 문화를 창조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습만이 우선시되어 쉼,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은 쉼, 놀이, 문화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쉼,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를 권리로서 분명히 인식하고 권리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 특히 학습부담 강화, 사교육 확대 등은 학생의 쉼,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학교당국은 교육당국,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 쉬는 시간의 향유

학교에서 '쉬는 시간'은 학생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쉬는 시간은 방금 끝난 수업을 정리하거나 다음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의 의미만 지니지 않는다. 쉬는 시간은 다양한 놀이와 문화와 관계가 창조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구성할지는 학생의 자유이다. 학교당국은 쉼,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쉬는 시간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2-1. 쉬는 시간을 함부로 줄이거나 없애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쉬는 시간이 축소되는 일은 없는지, 점심시간에 학습이 강요되지는 않는지, 쉬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는 않은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12-2. 쉬는 시간에 어떠한 놀이를 할지, 어떤 문화를 즐길지는 학생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학교당국은 합당한 자유 없이 학생이 하는 놀이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일이 없는지, 내용에 관계없이 만화책이라는 이유로 소지나 독서를 금지당하지는 않는지, 휴대폰이나 음악재생기 사용을 제지당하는 일은 없는지를 살펴 학생의 놀이·문화가 함부로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3. 학교 운동장이나 교정은 학생이 편히 쉬거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당국은 학생이 앉아 쉴 만한 의자나 나무그늘은 충분한지, 놀이시설은 다양하고 안전하게 구비되어 있는지,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특정 집단에게만 독점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학생을 위한 운동장이 주차공간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2-4. 학교당국은 학생을 위한 편안한 휴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휴공간의 개조나 교실 내 틈새 공간 활용 등도 가능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문화 활동

학생은 스스로 문화를 형성하고 자기만의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가진 문화와 문화 활동을 존중하고, 문화적 권리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 지원에는 학생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12-5. 학교당국은 학생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한지 살펴보고 지원해야 한다. 학교 밖 모임을 통한 문화 활동도 권장되어야 한다.

12-6. 학교 주최로 문화를 관람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을 미리 물어보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학생이 가진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함께 고려하여 다양한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2-7. 방과 후나 방학 중 학생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극장, 놀이공원, 유원지, 번화가 등 특정 장소의 출입을 아예 금지하는 일은 학생의 놀이·문화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재검토되어야 한다.

13. 사건 조사와 징계

학생은 폭력, 절도, 시험 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조사나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존엄을 지키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의 각종 징계 규정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 국내 법률에 부합해야 하고, 조사와 징계는 공정하고 적법해야 하며 학생이 감당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당국은 조사와 징계의 전 과정에서 학생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인종, 문화적 배경, 건강과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징계의 기준과 내용

학교의 징계규정은 인권의 기준과 법률에 부합해야 하고 어떠한 차별과 편견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의 징계는 사건의 원인 파악과 문제해결, 예방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징계가 응징적 성격이 되지 않으려면 심의 기구가 공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징계의 수준이 행위에 비춰 과도하지 않은지, 해당 학생이 감당할 만한 것인지 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13-1. 징계 규정은 인권의 기준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학생,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사건 조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기구는 학생에게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징계의 기준과 내용 등을 학교구성원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13-2. 학교당국은 학생이 조사 중인 사건 혹은 징계를 이유로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구분되거나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조사 중인 학생은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징계가 결정된 경우에도 징계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나 불리한 대우, 권리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13-3. 학교당국은 사건 조사 과정을 비롯하여 학교생활 전반에서 전체 학생이나 다수 학생이 부당하게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난사건 조사나 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이유로 과도하게 관리·감시하는 학교당국의 태도나 교사의 지도방식은 학생을 잠재적 범죄나 규정 위반자로 대상화할 우려가 있다.

13-4. 학교당국은 징계절차가 특정 학생에게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복해서 징계 상황에 놓이게 된 학생에 대해 자의적으로 징계절차를 간소화하여 해당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사건 조사와 징계 절차

학생은 사건 조사와 징계의 전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절차가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5. 학교당국은 국제인권기준과 법률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징계절차가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6. 잘못을 저지른 학생도 과도한 모욕과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징계의 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이 존중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실 규명, 학생 지도 등 어떠한 이유로든 학생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은 금지된다.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이나 판단 등으로 학생에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7. 학교당국은 조사 시간, 조사 장소, 조사 방법 등을 정하는데 있어 학생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인종, 문화적 배경, 건강과 심리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강압적이고 고통스런 상태에서 조사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조사, 소년원 유치, 사건 공개 등의 조치에 놓일 수 있다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강압적으로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일과 중의 사건조사는 사안의 긴급성을 객관적으로 따져 최대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13-8. 학교당국은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를 결정할 때 학생의 진술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 학교당국은 징계 결정에 앞서 학생에게 직접 변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생이 변론권을 행사하는데 심리적 압박을 비롯한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 학생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자료 제공, 보호자나 보조인의 선임과 출석, 학교 안팎의 조사활동 등을 보장해야 한다.

13-9. 조사의 시작과 이유, 심의 기구의 개최 사실과 구성, 징계 결정과 그 사유 등은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되어야 한다.

13-10. 학교당국은 규정된 징계 이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징계가 없도록 해야 하며, 규정에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학생을 징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3-11. 학교당국은 징계규정에서 학생과 보호자에게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재심에 대한 요청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되어야 하고, 불수용 시에는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 정보 처리 (공개, 보관, 폐기)

학생은 조사 중인 사건과 징계 처분에 대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조사 중인 사실이나 징계 사실이 공개되거나 유출되어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13-12. 학교당국은 조사 중인 사건 내용이나 징계 사실, 해당 학생의 이름 등이 공개되거나 유포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른 학생에 대한 계도와 예방을 피한다는 이유로 관련 사건을 공지하여 해당학생의 학교생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혐의만 갖고 당사자를 공개하여 수치심과 상처를 주는 일은 피해야 한다.

13-13. 학교당국은 학생의 징계 기록에 대한 접근권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록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재학 중의 징계가 외부에 공개되어 해당 학생의 진학, 취업, 결혼 등 졸업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14. 학교당국은 학생의 징계 기록 보관에 관한 학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적정한 기간을 정해 폐기 가능한 기록은 폐기하여 사면 복권한다.

■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

학생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징계 사건에 관련된 학생의 심리 상태와 처한 환경 등을 두루 살펴 교육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13-15. 학교당국은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의 관점에서 학생의 상담·치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건에 관련된 모든 학생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필요에 따라 사건의 종료 이전부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심리 상담과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과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아야 한다.

○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당국의 조치나 상담·치유, 교육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야 한다.

13-16. 학교당국은 학교의 명예를 이유로 사건을 조기 종료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 징계사건을 처리하는 학교당국의 태도는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회복, 가해자의 의식 전환, 재발 방지책 마련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

14.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

특별한 상황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은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가정에서의 학대, 사법처리, 경제적 차취, 폭력 피해 등을 경험한 어린이·청소년에게는 특별한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떤 돌봄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발견한 학교당국은 그들을 돌보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 학교당국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시보호조치를 포함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 교육당국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 가정 등에서 학대받는 학생

어린이·청소년은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청소년의 삶이 당사자의 안전과 존엄성에 위협적임을 인지할 경우, 학교당국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1. 학교당국은 학생이 보호자로부터 학대받고 있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학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보호, 경찰 신고, 전문가 상담, 지원프로그램 제공 등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당국은 교육당국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게끔 힘써야 한다.

- 학대받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지원방법을 소개받을 수 있는 상담창구
- 신고자(교사)에 대한 비밀과 신변 안전보장
- 가해자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청소년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
- 학대받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긴급하고도 구체적인 보살핌과 지원 프로그램
- 아동학대예방센터, 쉼터, 복지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조체계
- 지속적인 보살핌과 지원을 위해 학생의 학교간, 학년간 이동 시의 연계 방안

14-2. 학교당국은 보호자로부터 방임된 어린이·청소년이 놀림이나 따돌림, 폭력으로 추가적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보호자에게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4-3. 학교당국은 무의탁 상태나 일시보호시설, 보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학교생활에서 제외, 구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상담 체계는 학생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털어놓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사법처리에 놓인 학생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법절차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사법절차에 놓일 경우 해당 학생이 불리하거나 모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4-4. 학교당국은 사법수사 상태에 있는 학생이 적법한 절차를 누리고 여타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생 조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학교 방문 요청 시, 그 이유와 조건에 대해 분명하고도 엄격한 입장을 밝힌다.

○ 수사기관의 학생 구인 요청 시, 학생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한다.

○ 긴급성이 요구되는 체포의 경우, 영장의 소지 여부, 조건에 대한 확인 등 적법절차인지 여부를 따진다.

○ 학생을 수사기관에 인도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동행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 혼자서 수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

○ 학생에게 사법처리 절차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14-5. 학교당국은 학생이 사법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법 처리와 별개로 학교 명예 실추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주거나 전학을 종용해서는 안 된다.

14-6. 학교당국은 해당 학생의 학교복귀와 이후 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건이 공개되거나 학대 유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노동하거나 경제적 취취 상황에 놓인 학생

일하는 어린이·청소년은 경제적 취취나 모욕적인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일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취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4-7. 학교당국은 학습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고 학생의 노동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학생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다. 무조건 일을 금지하기보다는 학생의 욕구와 학생이 처한 상황, 일의 종류와 조건, 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일하는 부정적 시선이나 태도로 학생을 차별 대우하지 않도록 한다.

14-8. 학교당국은 학생이 일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생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일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취취적 상황에 놓일 위험이 높다. 최저임금을 포함한 노동권의 내용, 상담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지역사회와 연계한 해결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다.

14-9. 학교당국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전문계고 현장실습의 경우, 학교당국은 실습업체의 선정에서부터 추수지도, 사후 실습업체에 대한 평가와 재계약 등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현장실습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학교당국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나 각서를 강요하는 일은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다.

14-10. 학교당국은 학생에 대한 경제적 취취나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돋기 위해 교육과정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폭력피해 어린이·청소년

어린이·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교 구성원에 의한 체벌, 구타, 따돌림, 성폭력 등 폭력으로 피해 받은 학생을 발견할 경우, 해당 학생을 보살피고 구제할 책임이 있다. 폭력 피해 경험을 듣고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학생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4-11. 학교당국은 학교 내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배나 동급생에 의한 폭력, 선도부에 의한 기합, 남학생에 의한 성희롱, 교사에 의한 체벌 등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든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폭력의 가해자나 유형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

14-12. 학교당국은 교육당국과 함께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위해 충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폭력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한 시스템
- 상담과 치료를 위한 비용 등 구체적 지원
- 사과와 보상 등, 납득할 수 있는 사건해결 노력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폭력 피해 학생의 학교생활을 위한 고려

14-13. 학교당국은 폭력피해 학생의 학교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 사실이나 피해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낙인 등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의 분위기, 학교구성원들의 태도로 인해 폭력피해 학생이 위

축되거나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4-14. 학교당국은 학교 명예 훼손을 이유로 도리어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강요하거나 사건의 축소를 위해 가해자와의 화해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

14-15. 학교당국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폭력 경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나 피해자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교사와 여타 학생의 보호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유출돼 학생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14-16. 학교당국은 학내 성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규정이나 해결을 위한 체계를 마련토록 한다. 성폭력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인식 전환을 위해 학교 당국이 자체 성폭력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14-17. 학교당국은 학생, 교사, 직원 등 모든 학교구성원에게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5. 권리를 지킬 권리

모든 사람은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보장되고 있는 인권을 충분히 실현되는 질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의무가 있다.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은 부당한 법률이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양심과 인권의 보편적 요청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역시 자기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옹호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부당한 학교당국이나 교직원의 결정에 대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학생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절차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15-1. 학생은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힘의 행사에 대해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학생이 제기한 의견은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수용되어야 한다. 학생의 의견이 설명 잘못된 정보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견을 제기한 사실 자체가 처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교직원이나 학교당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한 힘의 행사를 중지시켰다는 이유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5-2. 학생은 학교 안팎에 마련된 구제절차를 통해 권리회복하거나 양심의 요청에 따라 권리회복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제보, 구제절차에 대한 접근, 증언이나 증거물 제출 등을 이유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

VI. 인권침해 발생 시 해결 조치

■ 이행 계획과 구제 절차

학교당국은 이 지침의 존재를 학교 구성원들에게 공지하는 한편,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 공개, 실천하여야 한다. 이행 계획에는 이 지침의 위반과 관련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행위의 즉각적 중

단,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학내 절차의 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이 지침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망설임 없이 이 절차에 호소할 수 있고, 학교당국은 이를 위한 제반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

지침의 위반에 관한 보고는 무게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교당국은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즉각적인 대처를 취해야 하고, 그 보고에 대해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다른 구제 절차에 대한 홍보

이 지침의 위반으로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당사자나 보조인은 학교 밖 다른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학교당국은 학교 밖에서 활용 가능한 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야 하며, 권리 구제 절차에 대한 접근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VII.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

이 지침의 이행을 위해서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 인권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때 교육당국의 정책적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 인권교육

학교당국은 학생 자신은 물론이고 학생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외부의 교육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학생 인권교육 :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 곧 자기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는 학생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생에게 적절하고 참여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교사 인권교육 : 학생 인권옹호자로서 교사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려면 교사의 인권 의식과 감수성, 전문적 능력을 고양할 수 있는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교사의 의사를 반영하여 교사에게 적절하고 참여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교사 스스로 준비한 학내 인권연수는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

○ 보호자 인권교육 : 가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학생 보호자의 학교 운영 참여 시 학생 인권에 대한 지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호자의 참여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권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한다.

■ 예산과 자원의 확보

이 지침의 이행을 위해서는 실행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교 예산을 편성할 때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야 한다. 학생 인권 보장 예산을

목적 경비화하여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일, 학생 인권 보장 항목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역사회, 교육당국 등과 연계하여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역 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 마련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일이 예가 될 수 있다.

■ 교육당국의 책임 촉구

학교당국은 학생 인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자신의 권한과 사용자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교육당국의 지원과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 학생 인권을 실현하려는 학교당국의 노력은 올바른 교육정책이 뒷받침될 때 진전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당국은 교육당국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교육당국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 교육당국은 교육정책 수립 시 학생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따져 보아야 한다.
- 교육당국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학교당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관련 지침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교육당국은 학생 인권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적극 논의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 교육당국은 학생 인권 실천 사례를 발굴, 보급하여 학교당국의 실천을 북돋아야 한다.
- 교육당국은 학교당국이나 교사가 다양한 상황에 놓인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소개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상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 교육당국은 교사, 학교 관리자, 담당 장학사 등에 대한 인권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 교육당국은 방과 후 학교 교사, 수련시설 교육담당자, 학교 사회복지사 등 학생 교육의 책임을 나눠맡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인권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III. 학생 인권 수준에 대한 정기적 점검

이 지침서에는 즉시 이행될 수 있는 학교당국의 의무와 장기적, 지속적인 이행계획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학교당국의 의무가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 학교당국은 지침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면서 이러한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 대한 진단은 미래에 대한 설계도이기도 하다.

학교당국은 성취된 결실과 당면한 장애요인, 추가로 필요한 조치 등을 파악하고 이행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된 체크리스트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학교의 구성원은 점검 결과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학교당국은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